

대학원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통상경영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

산업대학원

글로벌골프대학원

I. 일반대학원

1. 목적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은 교육기본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
 용 방법을 교수·연구하여 독창적인 연구능력을 함
 양하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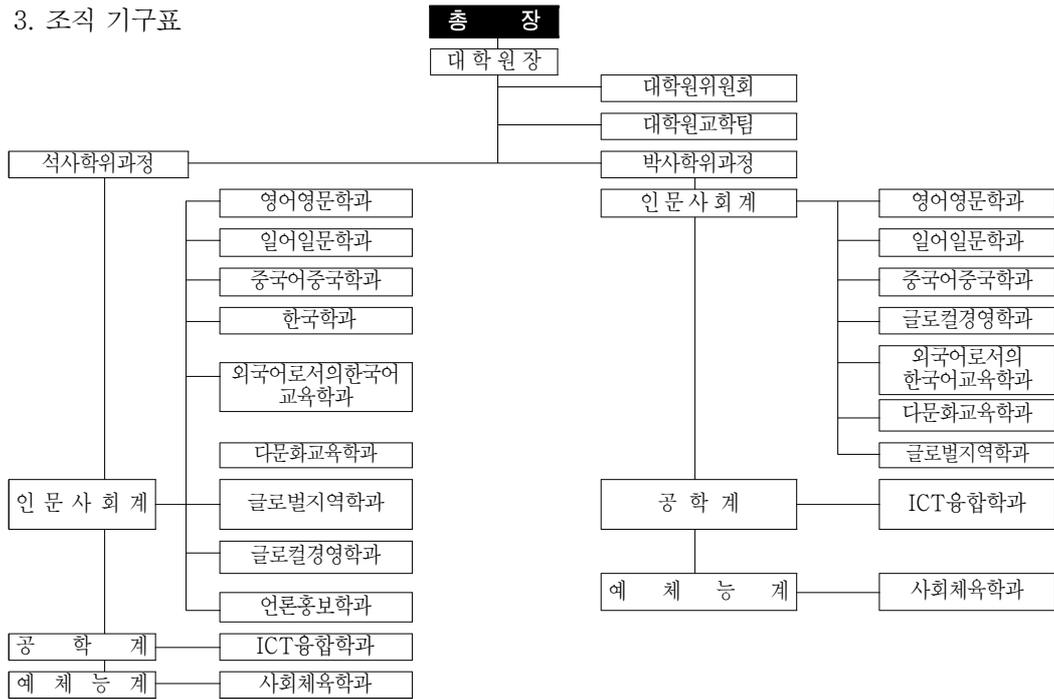
- 1959. 12. 24 학교법인 성지학원 설립인가
- 1981. 12. 26 부산외국어대학 설립 인가
- 1982. 3. 12 개 교
- 1988. 11. 30 대학원 설치 인가
 석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과, 법학과
 (2개 학과, 24명)
- 1989. 3. 3 대학원 개원
- 1989. 3. 3 초대 대학원장 김동선 학장 취임(겸직)
- 1989. 11. 6 석사학위과정 국어국문학과 신설 인
 가(3개 학과, 36명)
- 1990. 2. 7 제2대 대학원장 김동선 학장 취임(겸직)
- 1990. 11. 8 석사학위과정 독어독문학과, 진산학
 과, 외교학과, 경영학과 신설 인가(7개
 학과, 72명)
- 1991. 2. 7 제3대 대학원장 이창희 박사 취임
- 1991. 2. 22 석사학위 수여(문학석사 1명 법학석
 사 2명)
- 1991. 11. 16 석사학위과정 아주지역학과, 불어불
 문학과 신설 인가(9개 학과, 96명)
 진산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명칭 변경
- 1992. 2. 7 제4대 대학원장 김종헌 박사 취임
- 1992. 2. 21 석사학위 수여(법학석사 1명)
- 1992. 7. 28 석사학위과정 언어학과, 무역학과 신
 설 인가(11개 학과, 120명)

- 1992. 8. 21 석사학위 수여(문학석사 3명, 법학석
 사 1명)
- 1992. 12. 1 제5대 대학원장 문영득 박사 취임
- 1993. 2. 26 석사학위 수여(문학석사 8명, 정치학
 석사 2명, 공학석사 3명)
- 1993. 9. 4 석사학위과정 일어일문학과 신설 인
 가(12개 학과, 120명)
- 1993. 9. 9 제6대 대학원장 정상진 박사 취임
- 1994. 2. 25 석사학위 수여(문학석사 8명, 공학석
 사 4명)
- 1994. 8. 26 석사학위 수여(문학석사 2명, 법학석
 사 1명, 정치학석사 1명)
- 1995. 2. 24 석사학위 수여(문학석사 11명, 정치학
 석사 2명, 경제학석사 1명, 공학석사 1
 명)
- 1995. 8. 25 석사학위 수여(문학석사 2명, 경제학
 석사 1명, 공학석사 2명)
- 1996. 2. 23 석사학위 수여(문학석사 8명, 법학석
 사 2명, 정치학석사 2명, 경영학석사 1
 명, 공학석사 4명)
- 1996. 3. 20 제7대 대학원장 김종헌 박사 취임
- 1996. 8. 26 석사학위 수여(문학석사 8명, 법학석
 사 1명, 공학석사 1명)
- 1996. 11. 2 박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과 신설 인가
- 1997. 2. 21 석사학위 수여(문학석사 13명, 정치학
 석사 3명)
- 1997. 8. 22 석사학위 수여(문학석사 6명, 경영학
 석사 1명)
- 1997. 10. 25 박사과정 일어일문학과 신설 인가
- 1998. 1. 5 제8대 대학원장 김영길 박사 취임
- 1998. 8. 21 석사학위 수여(문학석사 2명, 정치학
 석사 2명, 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1명)
- 1999. 2. 19 석사학위 수여(문학석사 7명, 법학석
 사 1명, 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3명)
- 1999. 4. 1 제9대 정상진 박사 취임
- 1999. 8. 20 석사학위 수여(문학석사 6명)

1999. 10. 25	대학원 종합평가 실시		
1999. 11. 2	석사학위과정 사회체육학과, 박사학위과정 전자·컴퓨터공학과 신설 인가		
2000. 2. 2	대학원 종합평가 3개 영역 우수 대학원 선정(교과과정, 수업 및 논문 지도, 재정·경영)		
2000. 2. 18	석사학위수여(문학석사 11명, 법학석사 3명, 공학석사 4명)		
2000. 8. 18	석·박사 학위수여(문학석사 3명, 문학박사 1명)		
2001. 2. 16	석·박사 학위수여(문학석사 6명, 법학석사 3명, 지역학석사 5명, 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3명, 문학박사 2명)		
2001. 4. 24	명예박사 학위수여(명예정치학 박사 1명, 명예경영학 박사 2명)		
2001. 8. 17	석·박사 학위수여(문학석사 2명, 문학박사 1명)		
2002. 2. 1	제10대 대학원장 박성환 박사 취임		
2002. 2. 15	석·박사 학위수여(문학석사 8명, 법학석사 7명, 지역학석사 2명, 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5명, 체육학석사 5명, 문학박사 3명)		
2002. 3. 28	명예박사 학위수여(명예경영학 박사 1명)		
2002. 5. 18	명예박사 학위수여(명예정치학 박사 1명)		
2002. 6. 4	명예박사 학위수여(명예경영학 박사 1명)		
2002. 8. 6	명예박사 학위수여(명예경영학박사 1명, 명예교육학박사 1명)		
2002. 8. 16	석·박사 학위수여(문학석사 3명, 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1명)		
2002. 10. 31	석사학위과정 중국어중국학과, 박사학위과정 법학과 신설 인가		
2003. 2. 21	석·박사 학위수여(문학석사 12명, 법학석사 2명, 지역학석사 1명, 공학석사 4명, 체육학석사 5명, 문학박사 2명, 공학박사 1명)		
2003. 8. 14	석·박사 학위수여(문학박사 1명, 문학석사 3명, 공학석사 1명)		
2004. 2. 20	석·박사 학위수여(문학박사 2명, 문학석사 1명, 법학석사 1명, 공학석사 5명, 체육학석사 4명)		
2004. 3. 4	제11대 대학원장 류종렬 박사 취임		
2004. 8. 20	석·박사 학위수여(문학박사 1명, 공학박사 2명, 지역학석사 1명, 공학석사 1명)		
2005. 2. 18	석·박사 학위수여(문학박사 2명, 문학석사 7명, 법학석사 2명, 지역학석사 2명, 공학석사 4명, 체육학석사 6명)		
2005. 5. 6	박사학위과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과 신설		
8. 19	석·박사학위수여(문학박사2, 공학박사1, 문학석사2, 지역학석사1, 체육학석사1)		
11. 1	석사학위과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과 TESOL학과 신설		
2006. 2. 17	석·박사학위과정(문학박사2, 법학박사1, 문학석사8, 지역학석사1, 법학석사1, 정치학석사1, 공학석사6, 체육학석사1)		
2006. 2. 20	제12대 대학원장 정희자 박사 취임		
2006. 8. 18	석박사학위수여 10명(문학박사4, 지역학석사2, 한국학석사3, 법학석사1)		
2006. 10. 2	박사과정 사회체육학과 신설		
2007. 2. 13	석박사학위수여 30명(문학박사 5, 법학박사 1, 공학박사 1, 문학석사 5, 법학석사 2, 한국학석사 2, 공학석사 3, 체육학석사 11)		
2007. 8. 17	석박사학위수여 8명(문학박사 1, 법학박사 1, 문학석사 2, 한국학석사 4)		
2007. 11. 21	석사과정 국제지역학과 신설		
2008. 12. 3	석사과정 비교문학과 신설		
2008. 2. 13	석박사학위수여 21명(문학박사2, 문학석사10, 한국학석사1, 교육학석사3, 영어교육학석사1, 공학석사2, 체육학석사2)		
2008. 3. 1	제13대 대학원장 김상돈 박사 취임		
2008. 8. 22	석박사학위수여 13명(문학박사1, 문학석사2, 지역학석사2, 법학석사1, 교육학석사4, 영어교육학석사2, 공학석사 1)		
2008. 9. 10	명예박사 학위수여(명예행정학 박사 11명)		
2009. 1. 30	명예박사 학위수여(명예정치학 박사 1명)		
2009. 2. 19	석박사학위수여 17명(교육학박사1, 문학석사5, 지역학석사1, 교육학석사 5, 영어교육학박사2, 공학석사3, 체육학석사2)		

2009. 6. 30	명예박사 학위수여(명예 행정학 박사 1명)	2013. 2. 22	석·박사학위수여 38명(공학박사1명, 교육학박사 2명, 문학박사 6명, 체육학박사 3명, 공학석사 1명, 교육학석사 13명, 문학석사 7명, 법학석사 1명, 언어학석사 1명, 체육학석사 2명, 한국학석사 1명)
2009. 8. 21	석박사학위수여 19명(문학박사1, 문학석사2, 한국학석사8, 교육학석사7, 체육학석사1)	2013. 8. 23	석·박사학위수여 24명(문학박사 1명, 지역학박사 2명, 문학석사 3명, 한국학석사 4명, 교육학석사 13명, 국제지역학석사 1명)
2009. 10. 15	박사과정 국제지역학과 신설	2014. 2. 6	제17대 대학원장 하수권 박사 취임
2010. 2. 26	석박사학위수여 29명(문학박사3, 교육학박사2, 문학석사6, 법학석사1, 한국학석사2, 교육학석사7, 체육학석사5, 국제지역학석사3)	2014. 2. 21	석·박사학위수여 21명(문학박사1명, 교육학박사 1명, 체육학박사 1명, 문학석사 2명, 지역학석사 1명, 한국학석사 1명, 교육학석사 8명, 체육학석사 5명, 국제지역학석사 1명)
2010. 3. 1	제14대 대학원장 이용성 박사 취임	2014. 8. 22	석·박사학위수여 19명(문학박사 2명, 교육학박사 1명, 문학석사 5명, 한국학석사 1명, 교육학석사 8명, 국제지역학석사 2명)
2010. 8. 19	석·박사학위수여 13명(지역학박사 1, 한국학석사4, 교육학석사5, 공학석사2, 체육학석사1)	2015. 2. 15	석·박사학위수여 24명(문학박사4명, 교육학박사 1명, 문학석사 4명, 한국학석사 4명, 교육학석사 5명, 체육학석사 3명, 국제지역학석사 3명)
2010. 9. 14	석사과정 러시아어과 신설	2015. 8. 1	제18대 대학원장 백미혜리박사 취임.
2010. 8. 20	석·박사학위수여 13명(지역학박사 1, 한국학석사4, 교육학석사5, 공학석사2, 체육학석사1)	2015. 8. 21	석·박사학위수여 18명(법학박사 1명, 교육학박사 3명, 문학석사 6명, 한국학석사 2명, 교육학석사 5명, 국제지역학석사 1명)
2011. 2. 20	석사과정 러시아어과 신설, 석·박사학위수여 27명(문학박사 3명, 문학석사 7명, 지역학석사 1명, 교육학석사 10명, 공학석사 1명, 한국학석사 3명, 국제지역학석사 1명, 체육학석사 1명)	2016. 1. 1	제19대 대학원장 박경수박사 취임.
2011. 8. 19	석·박사학위수여 37명(문학박사 3명, 법학박사 1명, 교육학박사 2명, 체육학박사 2명, 문학석사 7명, 한국학석사 7명, 교육학석사 14명, 체육학석사 1명)	2016. 8. 19	석·박사학위수여 19명(교육학박사 2명, 문학석사 3명, 한국학석사 2명, 교육학석사 6명, 국제지역학석사 3명, 경영학석사 3명)
2012. 2. 6	제15대 대학원장 박종탁 박사 취임	2017. 2. 17	석·박사학위수여 30명(문학박사 3명, 교육학박사 2명, 체육학박사 3명, 경영학박사 1명, 공학박사 2명, 문학석사 1명, 한국학석사 2명, 교육학석사 10명, 체육학석사 2명, 국제지역학석사 2명, 경영학석사 2명)
2012. 2. 24	석·박사학위수여 38명(문학박사 4명, 지역학박사 1명, 교육학박사 3명, 체육학박사 2명, 문학석사 6명, 지역학석사 1명, 한국학석사 3명, 교육학석사 10명, 체육학석사 5명, 국제지역학석사 3명)		
2012. 8. 17	석·박사학위수여 23명(문학박사 1명, 법학박사 1명, 체육학박사 3명, 문학박사 4명, 한국학석사 3명, 교육학석사 6명, 공학석사 1명, 체육학석사 2명, 국제지역학석사 1명, 문학석사 1명)		
2012. 10. 17	제16대 대학원장 최성철 박사 취임		

3. 조직 기구표



4. 대학원 통합 학칙

대학원 학칙

제정 : 2005. 11. 1

개정 : 2006. 2. 3, 2006. 5. 10, 2006. 10. 2, 2007. 10. 26, 2007. 11. 21, 2008. 1. 28, 2008. 8. 13, 2008. 10. 15, 2009. 10. 15, 2010. 9. 17, 2010. 12. 7, 2011. 7. 29, 2012. 11. 1, 2013.12.4., 2014. 2. 28, 2014. 10. 21, 2014. 11. 6, 2015. 10. 23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조에 따라 이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대학교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산업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 글로벌골프대

학원(이하 “각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5.10.23)

제3조(교육목적)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은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독창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하고,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대학원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함으로써, 도덕적 품성과 지도력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양성함과 아울러, 재교육 및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경영대학원은 경영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세계인으로서의 인격과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도야함으로써 지역, 국가,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 23)
4. 통역번역대학원은 국제사회에 대한 전문지식

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최고 수준의 통역·번역전문인력 및 외국어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삭제(2015.10.23.)
6. 산업대학원은 산업기술 및 교육의 이론과 실체를 과학적 방법으로 교수하고, 연구하여 산업 및 교육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5.10.23)
7. 통합의학대학원은 관습적인 의학의 부분으로 간주하지 않는 일군의 다양한 의학 및 건강진료 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제공하여 관습의학과 함께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를 담당할 국제적인 전문 인력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상담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5.10.23)
8. 글로벌골프대학원은 골프와 관련된 비즈니스 전반적인 분야를 분석하며, 골프스윙원리, 골프스윙분석, 골프 기능성 트레이닝 및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실기 기술을 배워 골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을 가지며, 골프산업 및 골프 트레이닝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신설 2015.10.23)

제4조(교육목표) 각 대학원은 제3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일반대학원
 - 가. 독창적인 연구능력 함양
 - 나. 고급정보능력 신장
 - 다. 전문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전문지식 심화
 - 라. 학·관·산 협동능력 제고
2. 교육대학원
 - 가.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자로서의 품성 함양
 - 나. 교육이론을 폭넓게 이해하여 교육현장 활용
 - 다. 교과교육 및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응용능력 배양
 - 라. 교육현장과의 연계를 돈독히 하여 현장적응 능력 고취
 - 마. 교육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자질개발
3. 경영대학원(전문개정 2015.10.23)

- 가.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전문 경영인 양성
- 나.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배양
- 다. 창의적인 문제해결 및 전략기획 능력개발
- 라. 정보사회 커뮤니케이션 능력신장
- 마. 세계시민 자질배양

4. 통역번역대학원
 - 가. 급증하는 국제관계와 국제교류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통역인 양성
 - 나. 외국문화를 소개하며 국내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언어전문가 배출
 - 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회교류 전반에 걸친 상식을 지닌 언어전문가 배출
 - 라. 실질적인 외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양성

5. 삭제(2015.10.23)
6. 산업대학원(신설 2015.10.23.)
 - 가. 성실하고 창의적인 지식인 육성
 - 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전문인 육성
 - 다. 실무에 필요한 이론과 교육능력 함양
 - 라. 교육 현장 실습을 통하여 교육의 실용성을 강화
 - 마. 사회복지 상담이론을 통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양성

7. 통합의학대학원(신설 2015.10.23)
 - 가. 숙련된 카이로프랙틱 전문의사 양성
 - 나. 수기치료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
 - 다. 임상진단에 관한 다양한 지식배양
 - 라. 의학에 대한 통합적 사고능력배양

8. 글로벌골프대학원(신설 2015.10.23)
 - 가. 골프산업의 범위와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함양
 - 나. 골프스윙 메카니즘의 이해 및 적용능력 함양
 - 다. 다양한 골프스윙분석기술의 습득 및 함양
 - 라. 신체능력과 골프기술과의 관계에 관한 지식 함양
 - 마. 다양한 골프트레이닝 방법 습득과 적용능력 함양

제5조(학위과정) ①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학위과정을 둔다.

1.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2. 각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3. 일반대학원에 학·석사연계과정, 학과간 협동과정과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14.10.21)

② 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고, 공개강좌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과전공 및 정원)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편성 및 학생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개정 2011.7.29)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7조(학위의 종류)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의 학위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주말수업, 방송통신 및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

제 2 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제9조(입학허가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포함)허가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입학자격) ①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삭제(개정 2012. 11. 1)
- ③ 교육대학원은 학사과정 전공(부전공 포함)과

동 대학원의 전공분야의 불일치로 인해 교원자격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학할 수 있다.

제11조(입학지원 및 전형) ①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합격 후 소정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3조(외국인학생 입학) ①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외국인 또는 해외 교포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별도 전형절차를 거쳐 총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언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한국어강좌를 1학기 이상 이수할 것을 전제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생 입학) 정부 각 부처의 재직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각 대학원별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11.7.29)

제15조(편입학) 총장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재입학)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7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며, 각 특수대학원은 2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단, 통역번역대학원은 2년, 통합의학대학원 카이로프랙틱 전

공은 3년,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는 1.5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11.6., 2015.10.23)

② 전항에 있어서의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재학연한) ①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3년, 박사학위과정과 통합의학대학원 카이로프랙틱전공의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1.1, 2015.10.23)

② 각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1.1)

③ 전항에서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등록기간을 말한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으며, 재학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등록·휴학·복학·자퇴·제적 및 수료

제19조(등록) 전형에 합격한 신입생과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 등 등록에 필요한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수업 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한 등록금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등록금의 반환) ① 군 입대 휴학자의 경우 증빙에 의하여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을 이월할 수 있다.

② 등록금을 납입한 후 일반휴학 및 자퇴할 경우 반환 또는 이월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의 추가연장과 해외지사근무(국내지사 포함), 장기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휴학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하기 이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1.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 3.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
- 4. 대학원위원회의 징계의결로 인하여 제적된 자

제25조(수료) ① 수료를 위해서는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수료의 요건 등에 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교과와 학점

제26조(교과목) 각 대학원의 학과·전공별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교과목이수계획 지도)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입학 후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 이수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28조(수료 및 이수학점) ①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과정은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26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연구 4학점을 포함하여 4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통역번역대학원은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2015.10.23)

②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기당 이수학점, 타 대학원과의 학점인정, 대학원과 대학과의 공동수강, 선수과목 이수, 교원자격증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학업성적

제29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 등급	점수	평점	성적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F	70미만	0.0			

제30조(학점취득) 학점은 성적평점 2.0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계산하되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한 전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재이수)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성적평점이 2.5 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이수할 수 있다.

제 7 장 자격시험

제32조(구분) ①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의 시험응시자격, 시험의 종류, 시험 과목, 실시시기, 재응시, 시험위원과 합격여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유효기간)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논문 심사 합격시까지로 한다.

제 8 장 학위논문

제34조(논문제출 자격) 석사 또는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각 학위과정의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
2. 학업성적이 종합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3.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한 자
6. 이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신설 2014.10.21)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은 다음 각호에 따르며, 절차, 시기 및 방법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지도교수 선정
2. 논문계획서 제출
3. 논문발표 및 심사
4.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36조(논문심사위원)(개정 2011.7.29) ① 제출된 학위청구논문은 주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는 3인, 박사학위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은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③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견을 갖는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 외부인사 위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소정기일 내에 각 대학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38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관련 학회지 및 국제학회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단행본 발간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장 학위수여

제39조(학위수여요건)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각 과정별 학위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29)

제39조의2(복수학위 수여) ① 외국대학과의 대학원 과정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양대학은 각

각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1.7.29)
②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대학원과의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7.29)

제40조(학위기)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 박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하는 학위기를 수여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총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0 장 명예박사학위

제42조(자격) 학술과 문화에 크게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남긴 자에 대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3조(수여절차)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장의 추천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44조(학위종별) 명예박사의 학위종별은 이를 받은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 11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45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는 각 대학원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과제, 기간 및 수강인원 등 개설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6조(연구생) ① 각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로서 각 대학원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④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수강료, 학기당 이수학점 및 수료학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2 장 장학금 및 상별

제47조(장학금)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8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49조(징계)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효력에 관해서는 이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 13 장 학생지도 및 학생활동

제50조(학과·전공주임 및 지도교수) ① 각 학과·전공에는 주임교수와 지도교수를 따로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학과·전공주임교수는 그 학과·전공의 교수와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교과목의 지도, 논문지도, 기타 수학지도를 한다. 단, 지도교수는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51조(학칙준수) 학생은 이 대학원 학칙과 각종 내규를 준수하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

진하여야 한다.

제5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기본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3조(원우회)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각 대학원에 원우회를 둘 수 있다.

제 14 장 대학원위원회

제5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 일반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으로 한다.

제55조(위원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각 대학원별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명예박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6. 이 학칙 제24조 제4호에 관한 사항 (내부명시 사항)
7. 공개강좌와 특별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의 지급·보조에 관한 사항
9.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7조(위원회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일반대학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58조(운영위원회) 각 대학원별 운영에 있어서 대

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이외에 세부적 협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5 장 학칙개정

제59조(학칙개정절차) ① 위원회에서는 학칙개정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각 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총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칙개정안을 확정한다.

② 삭제 (개정 2012.11.1)

제 16 장 기타

제60조(현장실습) ①국내외의 산업현장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각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기당 학점인정은 9학점 이내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필요한 학점인정기준, 현장실습계획, 성적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이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62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2005. 10. 20. 교무위원회 318차 회의)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①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학칙,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 학칙, 통역번역대학원 학칙은 폐지한다.

②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학위수여규정, 대학원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대학원 교과운영 및 논문지도에 관한 세칙, 대학원 선수과목이수 규정, 대학원 장학금지급에 관한 내규,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 교육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교과운영 및 논문지도세칙, 입학전형시행세칙, 장학금지급 규정, 편입학규정,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 학사내규, 통역번역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조기졸업운영규정, 교과운영 및 논문지도세칙, 입학전형시행세칙, 장학금지급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일반대학원 학칙, 각 특수대학원 학칙에 의한 당해 대학원의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각 대학원별 구 학칙 및 각 규정, 세칙, 내규가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의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적생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 및 각 규정, 세칙,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2006. 2. 2. 대학원위원회 3차 회의)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5.09 대학원위원회 7차 회의)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국제통상대학원, TESOL대학원 및 정원조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9. 26 대학원위원회 12차 회의)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사회체육학과 박사과정 신설)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4 대학원위원회 21차 회의)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교육대학원 정원조정 및 전공 폐과·신설, TESOL대학원 정원조정)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20 제23차 대학원위원회)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일반대학원 국제지역학과 신설)은 200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25 제25차 대학원위원회)

제1조(경과조치) 국제통상대학원으로서의 명칭변경

학칙개정(2006.5.15)에 따른 학적변동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① 대학원 명칭의 경우 입학시의 명칭에 따르되 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는 변경된 명칭에 따른다.
- ② 전공의 경우 복학생은 입학시 전공을 적용하며 재입학생은 변경된 현행 전공에서 선택할 수 있다.
- ③ 학위명의 경우 입학시 학칙에 근거한 학위명을 적용한다.
- ④ 이 경과조치는 2007.3.1부터 소급적용 한다.

부 칙(2008. 7. 30 제29차 대학원위원회)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4 제31차 대학원위원회)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TESOL학과는 재적생이 졸업시까지만 유지되며,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② 국제통상경영대학원 명칭은 2009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변경된 전공명은 해당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09. 10. 13)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대학원 정원조정, 국지지역학과 박사과정 신설, 비교문학과 명칭변경)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14)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일반대학원 러시아어과 신설)은 201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7)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논문제출자격 추가, 석·박사학위 수여 취소)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29)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학생정원 변경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국제지역학과 재적생은 글로벌지역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반사회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상업정보교육전공의 재적생은 졸업시 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11. 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수업연한 변경, [별표1]의 학생정원 변경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28)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일반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는 석·박사과정에 글로벌경영학전공과 글로벌고위자전공을 두며,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0. 2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전자·컴퓨터공학과는 ICT창의융합학과로 국제통상경영대학원의 중국지역통상전공은 한중무역통상경영전공으로 학과(전공)명을 변경하여 2015년 3월 1일 입학자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경과조치) 제34조 6호는 2015년 3월 1일 입학자로부터 작용한다.

부 칙(2014. 11. 6)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23)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5.10.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정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 및 학위 종류표”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료 및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수료 및 이수학점 변경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TESOL 대학원은 2016.2.29일자로 폐지하되, 재적생은 졸업할 때 까지 동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대학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대학원 명칭이 변경되는 국제통상경영대학원재적생은 경영대학원 재적생으로 본다.

제6조(학과 및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과 동시에 폐지된 학과 및 전공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개정 전의 해당 학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 및 학위 종류표(개정 2014.10.21., 2015.10.23.)

1. 일반대학원

과정별	계열별	학과별	학위종별	입학정원 (명)	비고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34	
		일어일문학과	문학석사		
		중국어중국학과	문학석사, 지역학석사		
		한국학과	한국학석사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다문화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글로벌지역학과	국제지역학석사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언론홍보학과	인문학석사			
	공학	ICT창의융합학과	공학석사		
예체능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소 계				34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영어영문학과	문학박사	34	
		일어일문학과	문학박사		
		중국어중국학과	문학박사, 지역학박사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다문화교육학과	교육학박사		
		글로벌지역학과	국제지역학박사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박사		
	공학	ICT창의융합학과	공학박사		
	예·체능	사회체육학과	체육학박사		
합 계				68	

2. 교육대학원

과정	전공별	학위종별	입학정원 (명)	비고
석사학위과정	영어교육전공 베트남어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교육학석사	20	

3. 경영대학원

과 정	전 공 별	학위 종별	입학정원 (명)	비 고
석사학위과정	경영전공(MBA) 한중무역통상전공	경영학석사	20	

4. 통역번역대학원

과 정	전 공 별	학위 종별	입학정원 (명)	비 고
석사학위과정	한영전공 한일전공 한중전공	통역학 석사 번역학 석사 통역번역학 석사	40	

5. 산업대학원

과 정	전 공 별	학위 종별	입학정원 (명)	비 고
석사학위과정	경찰행정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 전기전자자동화전공 3D.로봇융합전공 어린이영어교육전공 어린이일본어교육전공 어린이중국어교육전공	경찰학석사 상담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교육학석사 교육학석사 교육학석사	40	

6. 통합의학대학원

과 정	전 공 별	학위 종별	입학정원 (명)	비 고
석사학위과정	카이로프랙틱전공	통합의학석사	20	

7. 글로벌골프대학원

과 정	전 공 별	학위 종별	입학정원 (명)	비 고
석사학위과정	골프비즈니스전공 골프과학전공	골프학석사	20	

[별지 제1호서식]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00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00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00대학원장 학위 ○ ○ ○

위의 증명에 의하여 00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위 ○ ○ ○

학위번호 : 부산외대 (석) _____

[별지 제2호서식]

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소 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①

위의 증명에 의하여 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 장 ①

학위번호 : 부산외대 (박) _____

[별지 제3호서식]

명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하여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탁월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이에 이 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명예 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명예 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 장 (인)

학위번호 : 부산외대 (명박) _____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연구 실적 증명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00대학원에서 년 월간을 연구하여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00대학원장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논문 제출자	전공		학번		성명	
지도교수	소속 전공				성명	
논문제목	국문					
	영문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에 있어 논문대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0. . . .

서약자: (서명)
 확인자: (서명)
 (지도교수)

○○ 대학원장 귀하

5.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정 : 2005. 11. 1

개정 : 2006. 6. 1, 2006. 10. 1, 2007. 5. 23, 2007. 10. 24, 2008. 5. 21, 2008. 7. 31, 2008. 10. 14, 2008. 12. 10, 2009. 1. 14, 2010. 7. 28, 2011. 7. 29, 2013. 12. 4, 2014. 10.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이 학칙”이라 한다)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 “이 대학원”이라 한다) 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대학원의 학사업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3조(입학지원자격) ① 이 학칙 제10조에 따라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박사과정

-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이 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은 입학할 수 없다.

제4조(입학지원서류) ① 이 학칙 제11조에 따라 이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의 전형료와 함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 가. 입학원서(일반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성적증명서

라.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마.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박사과정

가. 입학원서(일반대학원 소정 양식)

나.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예정)증명서

다. 학사 및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라.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마.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입학전형) ① 이 학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대학원 입학시험은 매년 2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전공구술시험, 면접, 가산점 부여의 방법 등으로 전형을 실시하며, 학위과정별 항목별 전형요소와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서류심사(학사학위과정 성적)

나. 전공구술시험(전공학문에 대한 이해도)

다. 면접(학습계획의 적절성)

2. 박사과정

가. 서류심사(학사 및 석사학위과정 성적)

나. 전공구술시험(전공학문에 대한 지식, 연구계획의 적절성)

다. 면접(학습계획의 적절성)

라. 경력가산점

③ 제2항의 항목별 평가 및 배점기준과 특별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개정 2011.7.29.)

제6조(전공구술시험 및 면접위원 위촉) 이 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각 학과의 강의담당 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전공구술시험 및 면접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4. 10. 31)

제6조(전공구술시험 및 면접위원 위촉) 이 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각 학과의 강의담당 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전공구술시험 및 면접위원 3인을 위촉한다.

제7조(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구성) ① 원장은 입학전형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8조(합격기준) 합격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합격결정) 원장은 입학정원과 지원자의 전형 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
- 제10조(편입학지원자격) 이 학칙 제15조에 따라 이 대학원 편입학지원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일정기간 수학한 자 또는 수료한 자로 한다.
 2. 박사과정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일정기간 수학한 자 또는 수료한 자로 한다.
- 제11조(편입학지원서류) 이 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학 원서(소정양식)
 2. 전적대학(원) 수료(재학)증명서
 3.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4.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5.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12조(편입학전형) 이 대학원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형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3조(재입학) ① 이 학칙 제16조에 따라 제적 또는 자퇴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하며 매 학기말 소정의 기일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정원여석 초과시 총 성적 평점평균 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개정 2011.7.29)
- ③ 재입학은 제적후 6개월(1학기)이상 경과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 ④ 재입학은 원적 학과에 한하여 허가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 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31)
- 제14조(학력조회) 이 대학원은 입학을 허가한 후 국내외 대학의 학력을 입학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회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제15조(수업연한) ①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이 학칙 제17조에 따라 2년 이상으로 한다.
- ②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 ③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다.
- 제16조(재학연한) ① 이 학칙 제18조에 따라 이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3년,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1. 제30조 제2항에 의거 학기당 기준학점 초과 취득자(신설 2011.7.29)
 2. 대학기 성적 평균평점 4.3 이상인 자(신설 2011.7.29)
 3. 재학기간 중 본인의 연구 실적이 공인된 국내·외 학회지에 단독으로 게재되거나 연구실적의 탁월성이 인정되는 자(신설 2011.7.29.)
 4.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신설 2014. 10.31)
- 제15조의2(조기졸업 지원자격 및 지원절차) ① 조기졸업 지원자격은 2회의 정규등록과 2학기차 까지 전공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이어야 한다.(신설 2011.7.29)
- ② 제15조의 2의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2학기차 말에 조기 졸업이수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7.29)
- 제16조(재학연한) ① 이 학칙 제18조에 따라 이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3년,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한다.
-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재학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및 수료

제17조(등록) ① 이 대학원 학생은 이 학칙 제19조에 따라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 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1.7.29)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개정 2011.7.29)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개정 2011.7.29)

제18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이 학칙 제20조에 따라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1.7.29)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개정 2011.7.29)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신설 2011.7.2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개정 2011.7.29)

제19조(휴학의 조건) ① 휴학은 재학중 입영, 질병, 가사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3선 이내에 허용한다.

- ② 휴학은 병역휴학과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 ③ 휴학은 이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해외발령, 타지발령, 군입대,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등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제20조(휴학의 기간 및 신청 시기)① 휴학은 1회에 2학기(1년)를 원칙으로 하며 통산하여 4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병역휴학
2. 해외발령, 타지발령,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 ③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에는 당해학기 개강일 이전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학사유 발생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3을 경과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21조(휴학의 절차)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휴학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사유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휴학사유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복학)① 휴학한 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을 하여야 하며 매학기 등록기간에 복학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③ 병역휴학자의 전역 일자가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인 경우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후라도 휴가기간 중의 수업 등으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수업이 가능한 경우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복학시 등록금) ①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인정한다.

②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군입대를 제외한 사유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대체·인정한다.

제24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제적) 이 대학원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한다.

1. 제16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석·

-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 2. 제20조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종료하였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4. 위원회의 징계의결로 인하여 제적된 자.
- 제26조(수료) ① 이 학칙 제25조에 따라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하며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료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4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33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나.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2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제36조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수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과목별 성적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 가. 4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33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나. 논문연구 4학점을 포함하여 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제36조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수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과목별 성적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교과와 학점

- 제27조(교과과정의 편성) ① 이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이 학칙 제26조에 따라 전공과 논문연구, 공통선택으로 구분한다.
- ② 전공은 단위학점을 3학점, 논문연구는 2학점, 공통선택은 1학점으로 한다. 단, 전공과목 중 현지교육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의 단위학점은 예외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교과과정은 2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주임교수가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 제출된 교과과정의 편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7.29)
- ④ (삭제 2011.7.29)
- ⑤ 교과과정은 이 대학원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⑥ 교과과정은 학부의 교과과정과 적절한 연계성을 갖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⑦ 석·박사학위과정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교과과정은 통합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제28조(교과목 이수) ① 석사학위과정은 전공과목 24학점 이상과 논문연구과목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박사학위과정은 전공과목 36학점 이상과 논문연구과목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타전공 입학자는 전공학점과는 별도로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른다.
- ③ 논문연구과목은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마지막 학기에 2학점을, 박사학위과정은 마지막 2개 학기에 걸쳐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논문연구과목의 평가는 합격(P), 불합격(F)으로 한다.
- ⑤ 외국인 학생에게는 원활한 논문작성을 위해 한국어와 관련한 별도의 공통선택 과목의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9조(교과목 개설) ① 교과목은 석·박사학위과정 및 학기차 구분없이 통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과목을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단, 논문연구 및 현지교육실습은 예외로 한다.
- ② 주임교수는 다음 학기 개설 과목을 소정의 기한 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학기 수강신청기간 이전 소정의 기일 내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강 학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3명 미만인 경우에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3.12. 4)
- ⑤ 학과사정에 따라 전일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0조(수강신청) ① 다음 학기 수강 교과목은 지도

교수의 지도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기당 신청학점은 논문연구과목을 제외하고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전공 입학자가 선수과목을 신청할 때의 학기당 신청학점은 제38조에 의한다.

④ (삭제 2014. 10.31)

제31조(성적포기) (삭제 2014. 10.31)

제3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과목과 전공이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교과목 담당교수가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 4.)

제33조(타 대학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① 이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중 국내외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이 대학원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 수료자가 편입학 하는 경우 석사과정은 13학점, 박사과정은 21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1.7.29)

② 삭제(삭제 2011.7.29)

③ 국내·외 대학원과의 협정에 의하여 학점교환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이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1.7.29)

④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9)

1.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1.7.29)
2. 해당 대학 대학원의 성적증명서(개정 2011.7.29)
3. (삭제 2011.7.29)

제34조(타 학과 학점인정) 한국학과 학생이 타 학과의 개설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외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외국인의 전공외 취득학점) 학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총장이 지정하는 한국어강좌를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외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6 장 선수과목

제36조(선수과목 이수 대상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이 학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학생이나 박사학위과정의 전공이 석사학위과정의 전공과 다른 학생 및 특수대학원 출신 학생들은 소정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7조(선수과목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선수과목 학점은 9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학사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중 선수과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교과목은 학과 주임교수의 인정과 원장의 승인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 선수과목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중 선수과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교과목은 학과 주임교수의 인정과 원장의 승인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제38조(선수과목 신청) 석사학위과정의 선수과목은 학사학위과정에서 개설된 과목중에서 대학원 전공학점을 포함하여 12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의 선수과목은 석·박사학위과정에서 개설된 과목중에서 전공학점을 포함하여 1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선수과목의 학점취득) ① 선수과목의 학점취득은 그 성적이 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선수과목 학점은 이 대학원 성적평균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③ 선수과목 학점은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0조(선수과목 결정) 선수과목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임교수는 해당 학기에 이수해야 할 선수과목을 매 학기초 수강신청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자격시험

제41조(자격시험의 구분) 이 학칙 제32조에 따라 이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42조(시험과목) ① 외국어시험의 과목은 영어, 일어, 중국어 중 택 1로 하며, 이외의 외국어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얻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② 종합시험의 과목은 해당 전공분야의 학식을 종합 평가할 수 있도록 주전공을 포함하여 2과목을 주임교수의 신청에 의하여 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7.29)

제43조(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을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과정에서는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44조(실시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학기 실시하며 그 시기는 3월과 9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시험위원과 평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담당하며 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외국어시험은 60점 이상, 종합시험은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46조(재시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과목 중 불합격된 과목은 다음 학기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제47조(유효기간)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논문 심사 합격시까지로 한다.

제 8 장 학위논문

제48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이 학칙 제3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각 학위과정별 논문연구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는 3학기 초에 연구제목, 목적,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출한 논문계획서상의 논문제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원장에게 논문제목변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50조(학위논문 심사 청구) 학위논문 심사청구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학위청구논문심사(발표)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역할) ① 지도교수는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단,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지도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14.10.31)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의 연구 및 작성을 지도한다.

③ 지도교수로 선정되어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지도교수에게는 논문심사비를 지급한다.

제51조의 2(공동 논문지도교수) 원장은 학과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이 대학교 전임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교내외 교원 중에서 공동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10.31)

제52조(지도교수의 위촉과 변경) ① 지도교수는 제2학기차에 주임교수가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고 학과교수의 회의를 거쳐 추천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된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주임교수가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고, 신·구 지도교수와 학과교수의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지도교수의 담당학생 제한) 지도교수의 담당 학생수는 매학기 각 학위과정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조(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위원의 자격) ① 이 학칙 제36조에 따라 논문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7.29)

② 석사학위과정의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과정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12. 4)

- ④ 심사위원 중 1인은 주심(위원장)으로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단,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 제55조(논문작성 사용언어) 논문은 국문 또는 전공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으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6조(논문작성 체제 및 방법) 논문의 규격, 체제 및 작성 방법 등은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의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7조(논문 심사위원 변경)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기간 중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8조(논문 심사기간)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 심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의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9조(공개발표) 논문은 주심의 주관하에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 및 관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1회 이상 공개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발표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0조(논문평가 및 심사횟수)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의 연구방법, 내용의 수준, 체제 및 학문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A, B, C, D로 평가하되, B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논문심사는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3회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심사는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4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1조(구술시험) 삭제
- 제62조(구술시험위원) 삭제
- 제63조(논문심사 판정)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 제64조(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체없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5조(논문제출 시한) 석사학위 논문은 석사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 박사학위 논문은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논문제출 시한에서 제외된다.
- 제66조(논문제출 부수) 합격 판정된 석사학위 및 박

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이 서명한 3부를 포함하여 소정의 부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31)

- 제66조의2(학위논문 공표) 심사에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은 1년 내에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1.7.29)
- 제67조(논문심사자료 제출) 이 대학원 위원회는 논문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한 문헌 또는 부분, 모형, 표본 등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9 장 학위수여

제68조(학위수여 요건) 이 대학원의 학위수여 요건은 이 학칙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 가. 4학기 이상 등록자. 단, 제30조 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나.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2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다. 제36조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수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과목별 성적평점이 3.0 이상인 자.
 - 라.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마.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2. 박사학위
 - 가. 4학기 이상 등록자. 단, 제30조 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나. 논문연구 4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다. 제36조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수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과목별 성적평점이 3.0 이상인 자.
 - 라.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마.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 제69조(학위수여 사정) 위원회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을 실시하여 학위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0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고 2월과 8월에 실시한다.

제71조(학위복장) 석사 및 박사 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후드 색상
 - 가. 문학, 한국학 - 흰색
 - 나. 법학 - 진자주색
 - 다. 지역학, 정치학 - 남색
 - 라. 경영학 - 담갈색
 - 마. 경제학 - 진밤색
 - 바. 교육학 - 하늘색
 - 사. 공학 - 오렌지색
 - 아. 체육학 - 황록색
2. 후드 내부의 색상은 교색으로 한다. (개정 2014. 10.31)
3. 학위모의 수술 색상은 석사모는 학위종별 후드 색상으로 하고, 박사모는 황금색으로 한다.

제72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학술과 문화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

1. 원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명예박사학위 수여 후보자를 결정한다.
2. 원장은 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수여 의결을 확정한다.
3. 명예박사학위는 이 대학교 학위수여일 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4. 명예박사학위 양식은 이 학칙 [별지 3호 서식] 과 같다.

제 10 장 연구생

제73조(연구생) ① 이 학칙 제46조에 따라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으로 한다.
- ③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 ④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이 학칙 [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생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제 11 장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제74조(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 ① 이 학칙 제47조에 따라 이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우수장학금, 학업격려장학금, 교직원복지장학금, 모교장학금, 인턴쉽장학금, 외국인장학금, 외부장학금 등으로 한다.(개정 2013.12. 4)

-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 ③ 성적우수장학금의 지급 인원은 각학과 재학생 수(6월말, 12월말 기준) 5명당 1명으로 한다.(소수점 이하는 버림)
- ④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 타 장학금의 수혜로 성적장학금을 포기할 경우 차석이 승계한다.(신설 2011.7.29)

제75조 ①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11.7.29)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
 2. 휴학한 자
 3. 정규학기(4학기)를 초과하는 자(신설 2013.12. 4)
- ② 장학금은 중복 지급을 하지 않는다. 단, 인턴쉽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1.7.29)

제76조(연구보조금) 연구능력이 현저히 뛰어나고 국내외 연구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일정부분의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장 현장실습

제77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60조에 따라 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8조(정의) 현장실습이라 함은 국내외의 산업현장 또는 관련기관과의 소정의 협약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교과과정 편성) 교과과정은 현장실습 I(1학기), 현장실습 II(2학기)로 개설하고, 전공선택 과정으로 편성한다.

제80조(신청자격)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학생으로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 최종학기의 계절제 참여는 불가하며, 학기제는 졸업사정 기간전 성적평가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81조(대상업체 추천 및 현장실습 계획서 제출) ① 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과 주임교수는 현장실습 실시 1개월 전에 현장실습대상추천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상업체의 추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산학협력체결 산업체
2. 해당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산업체
3. 기타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③ 학과 주임교수는 산업체와 협의 후 현장실습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현장실습 의뢰) 총장은 추천된 대상업체의 장에게 현장실습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3조(대상업체 결정) 대상업체에서 현장실습승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수락했을 때에는 이 대학원과 대상업체간에 현장실습에 관한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84조(과건학생 지참물 등) 학과 주임교수는 현장실습 과건 학생에게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시켜 과건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계획서
2. 현장실습일지
3. 현장실습성적평가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85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체에 도착한 학생은 도착 즉시 산업체의 장에게 도착신고를 하고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일지[별지 제15호 서식]를 매일 기록하여 현장지도 담당자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실습 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 기간 중 인지도한 산업체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6조(현장실습의무 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3. 현장실습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자

제87조(현장실습지도) ① 현장실습생의 지도를 위해 학과별로 지도교수를 둔다.

② 지도교수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습생의 작업환경,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고 실습생과 산업체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현장방문 지도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에게는 소정의 지도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8조(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① 현장실습 성적은 해당기관의 평가와 현장지도 및 실습일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현장실습성적평가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실습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적평가의 비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체 책임자 평가: 60%(해외업체 80%)
2. 지도교수 평가: 40%(해외업체 20%)

③ 현장실습에 의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고 석사는 최대 9학점, 박사는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학기당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주 ~ 8주 : 3학점
2. 9주 ~ 16주 : 6학점

제89조(현장실습 결과보고)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일지 및 봉인된 현장실습성적평가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 주임교수는 현장실습결과보고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 학칙, 이 대학원 학칙, 관련규정 및 현장실습 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등의 폐지)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대학원 교과운영 및 논문지도에 관한 세칙, 대학원 선수과목 이수규정,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이 대학원의 재적생에게도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②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 이전에 폐과된 무역학과,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언어학과, 아주지역학과, 경영학과, 외교학과, 아주지역학과와 재적생 및 수료생이 외국어시험 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한문 중 택 1로 한다.

부 칙(2006. 5. 9)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이 대학원의 재적생에게도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2006. 9. 26)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 30조 ④항의 외국인학생 수강신청은 2007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 33조 ②항의 본교 TESOL과정 수료자가 TESOL학과에 입학할 경우 한학기 등록단축은 2007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학업격려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5. 2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2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3조 제⑤항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5.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3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4조(장학금)은 2009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0.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

내용에 관한 변경사항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 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3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의 성적포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등록금 반환 기준(제18조제2항 관련)(개정 2011.7.29)

1. 당해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2]

복학시 등록금(제23조제2항 관련)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대체·인정한다.

휴 학 일 시	대체·인정 금액
수업일수 1/4 이전	등록금의 전액
수업일수 1/4경과후부터 수업일수 1/3경과 전	등록금의 2/3
수업일수 1/3경과후부터 수업일수 1/2경과전	등록금의 1/2
수업일수 1/2경과후	등록금 전액납부필

[별표 3]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제74조제2항관련)

(개정 2013.12. 4)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류	지급대상	지급내용
성적우수장학금	직전학기 성적이 4.3이상인 자 (재학중 1인 1회에 한함)	등록금 전액
학업격려장학금	미 취업 전업 학생	등록금의 2분의 1
	직장인	등록금의 3분의 1
교직원복지장학금	이 대학교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	등록금의 3분의 2
모교장학금	이 대학교 졸업자	입학금 전액 및 등록금의 2분의 1
인턴쉽장학금	재학생으로서 인턴쉽 근무자	별도금액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학생	입학금 전액 및 등록금의 2분의 1
외부장학금	외부기관 또는 기탁자의 목적에 적합한 자	별도금액

1. 재입학생, 학업격려장학금 및 교직원복지장학금 대상자의 경우 입학금 납부
2. 본교출신 외국인의 경우 석사과정 첫 학기에 한하여 대학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8 이상인 경우 등록금 전액, 3.8미만인 경우 등록금 2/3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해외 한국어 관련 학과 외국인 학생 중 총장이나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또는 해외 협정대학 출신 외국인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등록금 전액 지급
3. 글로벌경영학과의 글로벌고위자전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 입 학 원 서

학 과		석사/박사	성 명	
학 번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이 메 일 주소	
전 화	자 택) 휴대폰)			
주 소	(우) -			
제 적 일 자			제 적 사 유	
<p>위 사유로 제적되었던 바 20 학년도 제 학기에 재입학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p> <p style="text-align: right;">주임교수 : Ⓜ</p> <p>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 -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별지 제2호 서식]

휴학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학 과		석사/박사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 - 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휴 학 사 유	<input type="checkbox"/> 병무 <input type="checkbox"/> 가사사정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휴 학 기 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p>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①</p> <p style="text-align: right;">학과주임교수: ①</p> <p>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경 유 필	경리팀 (등록확인)	중앙도서관	예비군연대(男)	대학원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①	①	①	년 월 일	①	

◆ 병무휴학자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별지 제3호 서식]

휴학연장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학 과		석사/박사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 - 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연장전사유			연장전기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연 장 사 유	<input type="checkbox"/> 가사사정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 장 기 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학과주임교수: Ⓜ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유필	정리팀(등록확인)	대학원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	년 월 일			Ⓜ	

[별지 제4호 서식]

휴학사유변경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학 과		석사/박사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휴학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현역입영(육군·해군·공군) <input type="checkbox"/> 공익근무요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 대 일			제대예정일			
휴 학 기 간 (미 기 재)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휴학사유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 유 필	대학원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20 년 월 일			인		

◆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별지 제5호 서식]

복학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학 과		석사/박사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복 학 사 유	<input type="checkbox"/> 제대(제대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가사회복 <input type="checkbox"/> 건강회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휴 학 기 간 (미 기 재)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학기간)					
위와 같은 사유로 복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 유 필	등록확인	예비군연대(男) (후생관 4층)	대학원 접수 일자	전산입력확인		
	인	인	20 년 월 일	인		

◆ 제출서류 (병역휴학자):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전역증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별지 제6호 서식]

자퇴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학 과		석사/박사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사 유							
등록금 환불 여부(미기재)	<input type="checkbox"/> 환불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환불 미대상자		환불비율	등록금의 _ 분의 _			
위와 같은 사유로 자퇴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학과주임교수: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 유 필	등록금 환불대상 확인	중앙도서관	학생증반납	예비군연대(男) (후생관 4층)	대학원 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인	인	인	인	200 년 월 일	인	

◆ 제출서류 (등록금환불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별지 제7호 서식]

성적포기신청서				담당	팀 장	부원장	원장
학 과		석사/박사	학 번			학 기 차	
성 명			연 락 처	☎ ()			
				HP			
성적 포기 내용							비고
NO	포기과목	교과목번호	이수년도/학기	구분영역	학점수	취득성 적	
1							
2							
3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적포기는 3학기차 부터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확인기간에 한하여 포기신청을 하여야 함. 2. 성적 포기로 인한 해당학기의 성적순위 및 장학순위 등의 변동은 인정하지 않음. 3. 성적 포기한 과목은 복원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p>※ 위의 취소과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복원되지 않음을 숙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50px;">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p>							
대학원 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20 년 월 일				(인)			

[별지 제9호 서식]

논문연구 계획서

()과정

학과		학번		전공		성명	
----	--	----	--	----	--	----	--

논문제목			
○ 연구목적			
○ 연구방법 및 개요			
연구일정(~)	연구내용	비고	
~			
~			
~			
~			

○ 논문발표(공개발표)예정일자:

참고문헌 목록	
------------	--

위와 같이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지 도 교 수: (인)

학과주임교수: (인)

[별지 제10호 서식]

논문제목변경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학 과		석사/박사	학 번				
성 명			전 화 번호				
당 초 논 문 제 목							
변 경 된 논 문 제 목							
<p>위와 같이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p> <p style="text-align: right;">지 도 교 수: Ⓜ</p> <p style="text-align: right;">학과주임교수: Ⓜ</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p>							

[별지 제11호 서식]

학위청구논문 심사(발표)신청서			
과 정		구 분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수료생
학 과		학 번	
성 명		전 공	
주 소	(우) -	전화번호	
발표예정일	년 월 일	발표장소	
논문 제목			
<p>※ 확인기재사항</p> <p>1. 취득학점: 전공과목 학점 (평균평점- /4.5) 선수와목 학점 (평균평점- /4.5)</p> <p>2.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 종합시험()</p> <p>3. 신청구분: 급변학기 신청자() / 이전학기 보유자() 보유학년도- 년도 학기</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학위청구논문을 심사(발표)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 청 인: ①</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지 도 교 수: ①</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학과주임교수: ①</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p>			

◆ 논문심사료 - 석사과정 : 10만원
 박사과정 : 40만원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별지 제12호 서식]

<h2 style="margin: 0;">지도교수변경신청서</h2>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학 과		석사/박사	학번		성 명		
지도교수변경사항							
변경 전	①		변경 후	①			
변경 일자							
변경 사유	<p>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 청 인 : ①</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학과주임교수 : ①</p> <p style="margin-top: 50px;">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p>						

[별지 제13호 서식]

현장실습대상 추천서

대 상 업 체	산 업 체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실 습 대 상 자	학 년	성 명	학 번	실 습 기 간

위와 같이 현장실습 대상업체와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20 . . .

주임교수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현장실습 계획서

학 부 (과)		지도교수	(인)
산 업 체 명			
산 업 체 주 소		전화번호	
현장실습 계획			
교 과 목 명		실습기간	
실 습 생			
현장실습 과제			

[별지 제15호 서식]

현장실습 승인서

귀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 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승낙합니다.

산 업 체 명	실 습 부 서	실 습 학 생	실 습 기 간	기타(지시할 사항)

20 . . .

산업체기관명 (직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현장실습 일지

실 습 일 자	20 년 월 일(요일)	확 인	지도담당	부 서 장
실 습 학 생				
실 습 부 서		근무시간	시 ~ 시	
실 습 개 요				
실 습 기 자 재 명				
실 습 내 용				
실 습 결 과 자 기 소 견				

[별지 제17호 서식]

현장실습성적 평가서

학과		학번		학기차	
성명		교과목명		실습기간	

● 성적평가

산업체 평가			대학 평가		
평가 구분	성 적		평가 구분	성 적	
	만점	평가		만점	평가
성실성 (실습태도 등)	15		실습일지 기록평가	20	
협동성 (인화, 협조, 인간관계등)	15		부과한 과제평가	10	
창의성 (적극성, 개척의욕 등)	15		현장지도 평가	10	
성취도 (실습결과 등)	15		계	40	
계	60		종합평가		
종합평가(특기사항)			산업체 평가	점	
			대학 평가	점	
			계	점	
			학점 사정		
			학 점	성 적	
			학점	점	
20 평가자 (인)			지도교수	학부(과)장	
산업체장 직인			(인)	(인)	

[별지 제18호 서식]

현장실습결과 보고서

● 교과목명 :

학 번	성 명	산업체명	실습기간	학 점	성 적
총 원	명				

위와 같이 현장실습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학과주임교수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전공		학번		성명	
지도교수	소속 전공				성명	
논문제목	국문					
	영문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에 있어 논문대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서명)

확인자: (서명)

(지도교수)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조기졸업이수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		학기차		학번		성명	
<p>대학원 학칙 대학원 시행세칙 제15조의 2 ②항에 의거 조기졸업이수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전공주임교수: 인</p> <p style="margin-top: 50px;">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p>							

II. 교육대학원

1.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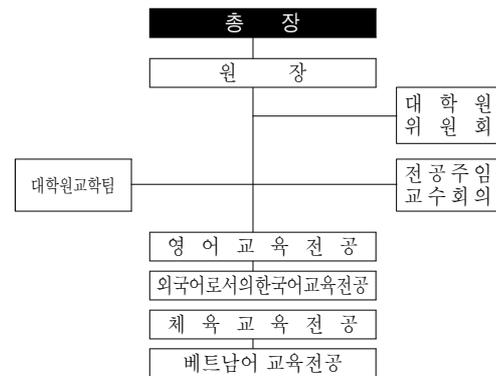
1959. 12. 24 학교법인 성지학원 설립 인가
1981. 12. 26 부산외국어대학 설립 인가
1982. 3. 12 개 교
1989. 12. 30 교육대학원 설치 인가
영어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신설 인가(3개 전공, 60명)
1990. 3. 3 교육대학원 개원
초대 교육대학원장 김동선 학장 취임 (겸직)
1991. 2. 7 제2대 교육대학원장 이창희 박사 취임
1991. 11. 18 독어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신설 인가(5개 전공, 90명)
1992. 2. 7 제3대 교육대학원장 김종현 박사 취임
1992. 2. 26 교육학석사 12명(국어교육 3명, 영어교육 5명, 일반사회교육 4명) 학위 수여
1992. 8. 21 교육학석사 6명(국어교육 3명, 영어교육 3명) 학위 수여
1992. 9. 1 수학교육전공 신설 인가(6개 전공, 105명)
1992. 12. 1 제4대 교육대학원장 문영득 박사 취임
1993. 8. 27 교육학석사 8명(국어교육 3명, 영어교육 5명) 학위 수여
1993. 9. 6 일어교육전공 신설 인가(7개 전공, 125명)
1993. 9. 9 제5대 교육대학원장 정상진 박사 취임
1994. 2. 25 교육학석사 5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1명, 일반사회교육 3명) 학위 수여
1994. 8. 26 교육학석사 29명(국어교육 8명, 영어교육 8명, 독어교육 1명, 일반사회교육 5명, 상업교육 7명) 학위 수여
1995. 2. 24 교육학석사 12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2명, 독어교육 2명, 일반사회교육 3명, 상업교육 4명) 학위 수여
1995. 5. 30 교육대학원 부설 중등교원연수원 설치
1995. 8. 25 교육학석사 23명(국어교육 9명, 영어교육 3명, 독어교육 1명, 일반사회교육 7명, 수학교육 2명) 학위 수여
1996. 2. 23 교육학석사 9명(국어교육 4명, 영어교육 2명, 일반사회교육 1명, 상업교육 1명) 학위 수여
1996. 3. 20 제6대 교육대학원장 김종현 박사 취임
1996. 8. 26 교육학석사 17명(국어교육 4명, 영어교육 4명, 일어교육 3명, 일반사회교육 2명, 상업교육 3명, 수학교육 1명) 학위 수여
1996. 10. 30 체육교육전공, 전산교육전공 신설 인가(9개 전공, 80명)
1997. 2. 21 교육학석사 9명(영어교육 2명, 독어교육 1명, 일어교육 3명, 일반사회교육 3명) 학위 수여
1997. 8. 22 교육학석사 17명(국어교육 6명, 영어교육 4명, 일어교육 2명, 일반사회교육 1명) 학위 수여
1998. 1. 5 제7대 교육대학원장 김영길 박사 취임
1998. 2. 20 교육학석사 11명(국어교육 3명, 영어교육 3명, 일어교육 1명, 일반사회교육 2명, 상업교육 2명) 학위 수여
1998. 8. 21 교육학석사 30명(국어교육 4명, 영어교육 8명, 일어교육 6명, 일반사회교육 6명, 수학교육 6명) 학위 수여
1999. 2. 19 교육학석사 23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7명, 일어교육 2명, 일반사회교육 6명, 상업교육 1명, 수학교육 6명) 학위 수여
1999. 4. 1 제8대 교육대학원 정상진 박사 취임
1999. 8. 20 교육학석사 44명(국어교육 4명, 영어교육 11명, 일어교육 4명, 일반사회교육 3명, 상업교육 4명, 수학교육 5명, 전산교육 4명, 체육교육 9명) 학위 수여
1999. 11. 17 교육대학원 종합평가 실시
1999. 11. 19 역사교육전공 신설 인가(10개 전공, 100명)

2000. 2. 18	교육학석사 5명(국어교육 3명, 수학교육 1명, 체육교육 1명)학위수여		명, 상업정보교육 1명, 상업교육 1명, 역사교육 1명) 학위수여
2000. 8. 18	교육학석사 39명(국어교육 6명, 영어교육 8명, 일어교육 3명, 수학교육5명, 전산교육 6명, 체육교육 11명)학위수여	2005. 2. 18	교육학석사 14명(국어교육 3명, 영어교육 2명, 일어교육 4명, 역사교육 1명, 수학교육 2명, 정보컴퓨터교육 1명, 체육교육 1명) 학위수여
2001. 2. 16	교육학석사 26명(국어교육 3명, 영어교육 6명, 독어교육 3명, 일어교육1명, 일반사회교육 2명, 수학교육 2명, 전산교육 3명, 체육교육 6명)학위수여	2005. 8. 19	교육학석사 88명(국어교육 13명, 영어교육 19명, 독어교육 1명, 일어교육 7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명, 일반사회교육 5명, 상업정보교육 2명, 수학교육 12명, 정보·컴퓨터교육 8명, 체육교육 15명) 학위수여
2001. 8. 17	교육학석사 47명(국어교육 7명, 영어교육 7명, 독어교육 1명, 일어교육5명, 일반사회교육 3명, 수학교육 7명, 전산교육 3명, 체육교육 14명)학위수여	2006. 2. 17	교육학석사 16명(국어교육 5명, 영어교육 2명, 독어교육 1명, 일어교육 3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명, 일반사회교육 2명, 수학교육 2명) 학위수여
2001. 9. 8	상업교육, 전산교육이 상업정보교육, 정보·컴퓨터교육으로 명칭변경 인가	2006. 2. 20	제11대 교육대학원장 정희자 박사 취임
2002. 2. 1	제9대 교육대학원장 박성환박사 취임	2006. 8. 18	교육학석사 89명(국어교육14명, 영어교육 12명, 일어교육 11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0명, 일반사회교육 6명, 수학교육 12명, 정보·컴퓨터교육 12명, 체육교육 12명) 학위수여
2002. 2. 15	교육학석사 12명(국어교육4명, 일어교육 1명, 수학교육 3명, 전산교육1명, 체육교육 3명 학위수여)	2007. 2. 13	교육학 석사 8명(영어교육 4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명, 정보·컴퓨터교육 1명, 체육교육 2명)
2002. 8. 16	교육학석사 76명(국어교육 8명, 영어교육 13명, 일어교육 7명, 일사교육 6명, 역사교육 1명, 수학교육 12명, 전산교육 13명, 체육교육 16명) 학위수여	2007. 8. 17	교육학 석사 96명(국어교육 11명, 영어교육 20명, 일어교육 15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명, 일반사회교육 7명, 상업정보교육 1명, 수학교육 15명, 정보컴퓨터교육 9명, 체육교육 13명)
2002. 11. 12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신설 인가(11개 전공, 110명)	2007. 10. 26	정보컴퓨터교육전공 폐과, 교육행정전공 신설인가(11개 전공 90명)
2003. 2. 21	교육학석사 12명(국어교육 3명, 영어교육 5명, 일어교육 1명, 상업교육 1명, 체육교육 2명)	2008. 2. 13	교육학석사 9명(국어교육 1명, 독어교육 1명, 일어교육 1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명, 역사교육 1명, 체육교육 3명)
2003. 8. 14	교육학석사 56명(국어교육 6명, 영어교육 11명, 일어교육 8명, 일반사회교육 1명, 수학교육 13명, 전산교육 1명, 체육교육 16명)	2008. 3. 1	제12대 교육대학원장 김상돈 박사 취임
2004. 2. 20	교육학석사 22명(국어교육 5명, 영어교육 9명, 일어교육 2명, 일반사회교육 2명, 전산교육 2명, 체육교육 2명)	2008. 8. 22	교육학 석사 79명(국어교육 14명, 영어교육 17명, 일어교육 12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명, 일반사회교육 5
2004. 3. 4	제10대 교육대학원장 류종렬 박사 취임		
2004. 8. 20	교육학석사 74명(국어교육 10명, 영어교육 10명, 일어교육 9명, 일반사회교육 6명, 전산교육 1명, 체육교육 14명, 정보컴퓨터교육 11명, 수학교육 7		

명, 상업정보교육 3명, 역사교육 2명, 수학교육 19명, 체육교육 2명)
 2008. 8. 28 독어교육전공, 교육행정전공 폐과
 2009. 2. 19 교육학 석사 12명(국어교육3명, 영어교육3명, 일반사회교육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3명, 수학교육2명)
 2009. 9. 24 교육대학원 입학정원 조정(9개 전공 70명)
 2010. 3. 1 제13대 교육대학원장 이용성 박사 취임
 2010. 8. 20 교육학 석사 24명(국어교육5명, 영어교육5명, 일어교육5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3명, 수학교육6명)
 2011. 2. 20 교육학 석사 16명(영어교육7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6명, 수학교육3명)
 2011. 8. 19 교육학석사 39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7명, 일어교육 7명, 상업정보교육 1명, 수학교육 3명, 체육교육 13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7명)
 2011. 9. 29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상업정보교육 폐과
 2012. 2. 6 제14대 교육대학원장 박종탁 박사 취임
 2012. 2. 24 교육학석사 12명(영어교육 4명, 일어교육 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6명, 체육교육 1명)
 2012. 8. 17 교육학석사 15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5명, 일어교육 1명, 역사교육 1명, 수학교육 2명, 체육교육 3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2명)
 2012. 10. 17 제15대 교육대학원장 최성철 박사 취임
 2013. 2. 22 교육학 석사 8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3명, 일어교육 1명, 상업정보교육 1명, 수학교육 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1명)
 2013. 8. 23 교육학 석사 19명 (영어교육 10명, 일어교육3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1명, 체육교육전공5명)
 2014. 2. 21 교육학 석사 8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3명, 일어교육 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1명, 상업정보교육1명, 수학교육1명)

2014. 8. 22 교육학 석사9명(국어교육1명, 영어교육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3명, 수학교육4명)
 2015. 2. 13 교육학석사 6명(영어교육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1명, 수학교육1명, 체육교육 3명)
 2015. 8. 1 제16대 교육대학원장 백미혜리 박사 취임.
 2015. 8. 21 교육학석사 11명(국어교육1명, 영어교육5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1명, 수학교육1명, 체육교육3명)
 2016. 1. 1 제17대 교육대학원장 박경수 박사 취임
 2016. 8. 19 교육학 석사24명(영어교육6명, 일어교육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11명, 체육교육6명)
 2017. 2. 13 교육학석사 11명(국어교육1명, 영어교육7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1명, 수학교육2명)

2. 조직 기구표



3. 교육대학원 시행세칙

제정 : 2005.11.1.
 개정 : 2006.10.1. 2007.10.24. 2008.8.1. 2008.12.9.
 2009.1.20. 2009.5.12. 2009.12.8. 2010.1.26.
 2010.10.12. 2011.7.29. 2012.11. 1. 2013.12.4.
 2014.10.31. 2015.8.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이 학칙’이라 한다)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이 대학원’이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대학원의 학사업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제3조(입학지원자격) 이 학칙 제10조에 따라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입학지원서류) 이 학칙 제11조에 따라 이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의 전형료와 함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교육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성적증명서
4. 재직증명서(현직교사 및 교육관련직 종사자에 한함)
5.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6.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입학전형) ① 이 학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대학원 입학시험은 매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전공구술시험, 면접, 가산점 부여의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하며, 항목별 전형요소와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 10. 1)

1. 서류심사(대학 전학년 성적)
2. 전공구술시험 : 전공교과에 대한 이해도 측정
3. 면접 : 학습계획의 적절성

4. 가산점

가. 현직교사(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또는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자),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연구원, 연구관) 및 교육행정사무직(조교는 제외) 종사자 : 20점

나. 교직 선수과목 이수정도 : 10점(과목당 1점)

다. 한국어교육 전문기관의 강의경력(연 100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해당) : 20점(년 5점)

라. 자격인정정도(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해당)

- 1)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이수 : 5점
- 2) 한국어교육능력인정시험 합격 : 10점
- 3) 한국어교원 2급 : 20점
- 4) 한국어교원 3급 : 10점

마. 동일계 전공자(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해당)(개정 2011.7.29)

- 1) 학부과정 주전공자 : 20점
- 2) 학부과정 부전공자 : 10점

(단,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 다, 라, 마 총 가산점은 최대 20점까지 부여한다.)(개정 2011.7.29)

③ 제2항의 요소별 평가 및 배점기준과 특별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개정 2011.7.29)

제6조(전공구술시험 및 면접위원 위촉) 이 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전공 관련 교수 중에서 전공구술시험 및 면접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2.11.1)

제7조(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구성) 원장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합격기준) 합격기준은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합격결정) 원장은 입학정원과 지원자의 전형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

제10조(편입학지원자격) 이 학칙 제15조에 따라 이 대학원 편입학지원 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일정 기간 수학한 자 또는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제11조(편입학지원서류) 이 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응

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다음 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학 원서(소정양식)
2. 전적대학원 수료(재학)증명서
3.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4.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5.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2 조(편입학전형) ① 이 대학원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형으로 한다.

②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대학원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편입 학기	학점인정
2학기 편입	· 전공(교직공통포함)과목 6학점 이상 · 교직과목 4학점 이상
3학기 편입	· 전공과목(교직공통포함) 12학점 이상 · 교직과목 8학점 이상

제12조2(전과) 전공의 폐지로 인한 해당 전공의 재적생은 전과할 수 있다.(신설 2008.8.1.)

제13조(재입학) ① 이 학칙 제16조에 따라 제적 또는 자퇴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하며 매 학기말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지원자가 정원여석을 초과한 때에는 평점평균순에 의하여 선발한다.
- ④ 재입학은 제적 후 6개월(1개 학기)이상 경과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 ⑤ 재입학은 원적 전공에 한하여 허가하며 이미 취득학점은 수료(이수)학점에 통산한다.
- ⑥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1.7.29)

제14조(학력조회) 입학허가후 국내·외 대학의 학력을 6개월 이내에 조회하여야 한다.(개정 2011.7.29)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5조(수업연한) ①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이 학칙 제17조에 따라 2년 6월(5학기)로 한다.

②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수업 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7. 10. 24)

1. 제30조 제2항에 의거 학기당 기준학점 초과 취득자
2. 매학기 성적 평균평점 4.3이상인 자
3. 재학기간 중 본인의 연구 실적이 공인된 국내외 학회지에 단독으로 게재되거나 연구 실적의 탁월성이 인정되는 자(개정 2011.7.29)

제15조의 2(조기졸업 지원자격 및 지원절차) ① 조기졸업 지원자격은 3회의 정규등록과 3학기차까지 전공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제15조 3항의 각 호를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5조의 2의 1항의 자격을 갖춘자는 3학기차 말에 조기졸업 이수신청서(별지 11서식)를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9)

제15조의 3(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삭 제>(삭제 2011.7.29)

제15조의 4(조기졸업 결정) <삭 제>(삭제 2011.7.29)

제15조의 5(조기졸업자 학위청구논문 제출) <삭 제>(삭제 2011.7.29)

제16조(재학연한) ①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이 학칙 제18조에 의거 4년(8학기)으로 한다.

②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학연한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및 수료

제17조(등록) ① 이 대학원 학생은 이 학칙 제19조에 따라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미 취득학점이 3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2분의1, 4학점이상일 경우에는 전액을 납입하

여야 한다.

제18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 학칙 제20조에 따라 등록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삭 제>(삭제 2011.7.29)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1.7.29)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신설 2011.7.2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9조(휴학의 조건) ① 휴학은 재학중 입영, 질병, 가사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중 4분의 3이내에 허용한다.

② 휴학은 병역휴학과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③ 휴학은 이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해외발령, 타지발령, 군입대,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등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제20조(휴학의 기간 및 신청 시기) ① 휴학은 1회에 2학기(1년)를 원칙으로 하며 통산하여 4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7.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병역휴학
2. 해외발령, 타지발령,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③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에는 당해학기 개강일 이전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학사유 발생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을 경과한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21조(휴학의 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7.29)

②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휴학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7.29)

③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사유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휴학사유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7.29)

제22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을 하여야 하며 매학기 등록기간에 복학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③ 병역휴학자의 전역 일자가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인 경우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후라도 휴가기간 중의 수업 등으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수업이 가능한 경우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복학시 등록금) ①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군 입대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신설 2011.7.29)

②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군 입대를 제외한 사유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체하여 인정한다.(개정 2011.7.29)

제24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제적) 이 대학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제16조에 규정된 재학연한 내에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2. 제20조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종료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이 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징계된 자

제26조(수료) ① 이 학칙 제25조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하며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수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수료학점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 3. 석사학위 수료학점 최저요건(개정 2012.11.1)

구분	과목	학점	비고
교직공통	2	6	공통
전 공	6	18	공통
논문연구	1	2	공통
계	9	26	

단, 외국어로서한국어교육전공의 수료 학점은 제 2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교과와 학점

제27조(교과과정의 편성) ① 이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이 학칙 제26조에 따라 교직공통, 교직선택, 교직기초, 전공, 논문연구로 구분한다.(개정 2012.11.1)

- ② 교직공통과 전공은 단위 학점을 3학점, 교직선택과 논문연구는 2학점으로 하고, 교직기초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이수여부만으로 평가한다.
- ③ 편성된 교과과정은 2년 이내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임교수가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제출된 교과과정의 편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교과목의 구성과 이수) ① 교직공통은 일반교육학 영역의 교과목으로 구성하고, 전공은 교과교육학영역과 교과내용학영역, 논문연구로 구성한다. 다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은 전공과 논문연구로 구성한다.(개정 2009.5.12)

- ② 이수학점은 교직공통 6학점, 전공 18학점 이상으로 한다. 교직공통의 6학점과 전공별 교과교육학영역에서 6학점 이상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은 전공 24학점, 논문연구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4.12)

부전공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전공별로 개설되어 있는 교과교육학 3과목 중(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충족하여 학부 및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30학점 이상 되

어야한다.(개정 2012.11.1)

- ③ 교직 이수자는 전공 18학점 내에 ‘교과교육학’ 3과목 중(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④ 삭제 (개정 2012.11.1)

- ⑤ 논문연구는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위 과정 마지막 학기에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성적평가는 합격(P), 불합격(F)으로 처리한다.(개정 2006. 10. 1)(개정 2011.7.29)

- ⑥ 교직기초과목(인성교육) 이수 시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P로 처리한다. 인성교육은 특강으로 실시하며, 4회(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제29조(교과목개설) ① 학기당 교직공통은 1과목, 전공은 전공별로 4과목, 이내 교직기초 1과목, 교직선택은 6과목(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포함)을 개설한다. 다만, 전공별 교과교육학영역의 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공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2.11.1)

- ② 교과목은 학기의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과목을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논문연구 및 교직기초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1)

- ③ 주임교수는 다음 학기 개설 과목을 소정의 기간 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학기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소정의 기일 내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강학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3명 미만인 경우에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30조(수강신청) ① 매학기 수강신청은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학기당 신청학점은 6학점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2.9)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 ③ 교직선택은 3과목 이내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

- 적기초는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2.11.1)
- 제31조(성적포기)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등급에 제한 없이 포기할 수 있다.
- ② 성적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3학기차부터 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 확인기간 중에 성적포기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포기한 성적은 복원할 수 없으며 장학순위나 졸업학점 성적이 반영하지 않는다.
- 제3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과목과 전공이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교과목 담당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11.1)
- 제33조(교육실습) 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교육실습은 학교현장실습(2학점)과 교육봉사활동(2학점)으로 구분한다.
- ③ 현장실습은 3학기부터 실시할 수 있고 4주 이상 학교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에서 인정한 보조교사나 봉사활동 또는 참여관찰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2학점(60시간)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 ④ 교육봉사활동(2학점)은 60시간을 기준으로 합격(P), 불합격(F)로 처리한다. (개정 2008.12.9.)(개정 2011.7.29)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1.7.29)
1. 교원자격 무시시험검정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목 전체를 면제하며,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에도 교육실습을 면제한다.
 2.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일 경우 면제한다.
- 단, 중등학교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12.11.1)
- 제34조(타 대학원과의 학점인정) ① 이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중 국내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이 대학원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6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 수 있다.
- ②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점 인정원(별지 제8호 서식)
 2. 해당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3. <삭 제>(2007. 10. 24)
- ③ 원장이 인정하는 타 대학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학점교환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대학원 학생이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 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다만, 1학기에 6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제 6 장 자격시험

- 제35조(자격시험의 구분) 이 학칙 제32조에 따라 이 대학원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한다.
- 제36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은 일반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각 영역별로 2과목 이상을 주임교수가 신청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 제37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은 3학기 이상 이수하고 18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평균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 제38조(실시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개학 후 40일 이내에 실시한다.
- 제39조(시험위원과 평점) 종합시험은 일반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영역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고 영역별 70점 이상으로 하며, 3개 영역 모두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40조(재시험) 종합시험 과목중 합격한 영역은 인정하고 불합격한 영역은 다음 학기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1.7.29)
- 제41조(유효기간)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로 한다.

제 7 장 학위논문

- 제4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이 학칙 제3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3조(논문연구계획서) ① 논문연구계획서(별지 12

호 서식)는 4학기 초에 연구제목, 목적,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7.29)

② 논문제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원장에게 논문제목변경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44조(논문제출 시기) 심사용 논문의 제출시기는 매년 5월 또는 11월로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과 역할) ①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②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의 연구 및 작성을 지도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로 선정되어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논문지도교수에게는 논문심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1.7.29)

제46조(논문지도교수 위촉과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는 제3학기에 전공 주임교수가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고 전공별 소속교수와 협의를 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교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공 주임교수가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고 신·구 지도교수와 전공별 교수의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변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의 담당 학생 수는 매학기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이 학칙 제36조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주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7.29)

② 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외부인사는 타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2.11.1)

③ 심사위원은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11.1)

④ 심사위원 중 1인은 주심으로서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제48조(논문작성 사용언어)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으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논문작성 체제 및 방법) 논문의 규격, 체제 및 작성 방법 등은 학위논문작성지침에 의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논문심사위원 변경)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은 심사기간 중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논문심사기간)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7.29)

제52조(공개발표) 논문 발표는 반드시 주심의 주관 하에 심사위원 및 관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1회 이상 공개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발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9)

제53조(논문 평가 및 심사횟수) ① 논문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연구방법, 내용의 수준, 체제 및 학문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A, B, C, D로 평가하되, B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7.29)

② 심사 횟수는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구술시험위원) 구술시험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겸임한다.

제55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등을 기준으로 1회 이상 시행하며,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제56조(논문심사·구술시험 판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제57조(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

고서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9)

제58조(논문제출 시한) 논문은 석사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 10. 24)

제59조(논문제출 부수) 합격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서명한 3부를 포함하여 6부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제 8 장 학위수여

제60조(학위수여 요건) 이 대학원의 학위수여 요건은 이 학칙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9)

- 1. 제26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제61조(학위종별) 이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1)(개정 2011.7.29)

교육학석사: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일어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제62조(학위신청 구비서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용 학위논문 4부 및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 2.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제63조(학위수여자 사정) 이 위원회는 학위수여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자격 여부에 대한 사정을 실시한 후 학위수여자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의 시기는 2월과 8월로 연 2회로 한다.

제65조(학위복장) ① 학위복의 후드색상은 하늘색으로 한다.

- ② 후드 내부의 색상은 보라색으로 한다.
- ③ 학위모의 수술 색상은 하늘색으로 한다.

제 9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66조(공개강좌) ① 이 학칙 제45조에 따라 공개강좌의 과정명, 과목 또는 내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등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수강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연구생) ① 이 학칙 제46조에 따라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③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④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인 학칙 [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생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원장이 책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10장 TESOL 과정(삭제 2006. 10. 1)

제68조(설치)삭제

제69조(모집정원) 삭제

제70조(운영) 삭제

제11장 장학금 및 상벌

제71조(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 ① 이 학칙 제47조에 따라 이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우수장학금, 학업격려장학금, 외국인장학금, 법인재직장학금, 인턴쉽장학금, 교직원복지장학금, 공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면학장학금, 모교장학금, 가족장학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1.7.29)

③ 성적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 타 장학금의 수혜로 성적장학금을 포기할 경우 차석이 승계한다.(신설 2011.7.29)

④ 성적우수장학금은 매 학기 전공별 1명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수(6월, 12월기준)가 3명 미만인 전공은 지급대

상에서 제외하고, 3명 이상 10명 이하인 전공은 1명, 11명 이상 20명 이하인 전공은 2명, 21명 이상 30명 이하인 전공은 3명, 31명 이상 40명 이하인 전공은 4명, 41명 이상인 전공은 5명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9)

제72조(지급대상 및 내용) <삭 제>(삭제 2011.7.29)

제73조(지급제한) ①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개정 2011.7.29)

-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
- 2. 휴학한 자
- 3. 정규학기(5학기)를 초과하는 자

② 장학금은 중복 지급을 하지 않는다. 단, 인턴십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7.29)

제74조(연구보조금) 연구능력이 현저히 뛰어나고 국내·외 연구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일정부분의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현저히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공주임교수 또는 원장의 추천으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76조(징계) 이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을 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전공주임교수 또는 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효력에 관해서는 이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구 교육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같은 교과운영 및 논문지도 세칙, 같은 입학전형 시행세칙, 같은 장학금지급 규정, 같은 편입학 규정은 폐지한다.

② 이 세칙 시행 이전에 교육대학원의 재적생에게도 본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의 교과목 이수구분, 영역별 학점 이수 및 제60조 제1호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의 학위수여요건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72조 제2항의 학업경력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의 제3항 및 제15조의 2, 제15조의 3, 제15조의 4, 제15조의 5, 제34조 제2항 3호는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2조의 2호는 2009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3호, 제28조 2항, 3항 제3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8학년도까지의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 2항의 개정 규정은 재학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 6항의 개정 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에 적용하며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2조 10호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12일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7. 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에 관한 변경사항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1. 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26조 2항의 수료학점 및 제28조 6항의 교직기초과목 변경은 2013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8. 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9조의 2(학위논문대체인정)은 부칙(2014. 10.31.) 제2조에도 불구하고 수료생 및 재학생에게 적용하며 수료생의 학점이수에 따른 등록금은 17조(등록)에 준한다.

[별표 1]

등록금 반환 기준(제18조 제3항 관련)(개정 2011.7.29)

1. 당해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등록금은 아래표와 같이 구분하여 반환한다.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2]

복학시 등록금(제23조 제2항 관련)(개정 2011.7.29)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대체하여 인정한다

휴 학 일 시	대체·인정 금액
수업일수 1/4 이전	등록금의 전액
수업일수 1/4 경과 후부터 수업일수 1/3 경과 전	등록금의 2/3
수업일수 1/3 경과 후부터 수업일수 1/2 경과 전	등록금의 1/2
수업일수 1/2 경과 후	등록금 전액납부필

[별표 3]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제71조 제2항 관련)
(신설 2011.7.29)(개정 2014.10.31.)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류	지급대상	지급내용
성적우수장학금	직전 학기의 성적이 우수하며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 1/3
학업격려장학금	교사로 재직 중인 자	등록금 1/2
	교직원 및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등록금 1/3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학생	입학금 1/2 및 등록금 1/3
법인재직장학금	이 대학교 법인 교직원	등록금 1/2
인턴쉽장학금	재학생으로서 인턴쉽 근무자	별도 금액
교직원복지장학금	이 대학교 교직원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이 대학교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	등록금 2/3
공로장학금	이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원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1/3
봉사장학금	원우회 회장 및 총무 등 학생회 활동에 봉사하고 있는 자	등록금 1/3
면학장학금	가계곤란자로서 주임교수 및 원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1/3
모교장학금	이 대학교 졸업자	등록금 1/3
가족장학금	이 대학원에 가족 2명이상 재학시 1인	등록금 1/3

1. 각종 장학금 지급에서 입학금은 제외. (이 대학교 교직원은 제외)
2. 외국인장학금은 본교출신 외국인의 경우 입학금 전액 및 등록금 1/3 지급

[별지 제1호 서식]

재 입 학 원 서

전 공		성 명	
학 번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이 메 일 주 소	
전 화	자 택) (휴대폰)		
주 소	(우) -		
제 적 일 자		제 적 사 유	
<p>위 사유로 제적되었던 바 20 학년도 제 학기에 재입학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p> <p style="text-align: right;">주임교수 : Ⓜ</p> <p>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 -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578 대학원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휴학사유변경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총장
전 공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 택		
			휴 대 폰		
휴학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현역입영(육군·해군·공군) <input type="checkbox"/> 공익근무요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 대 일		제 대 예 정 일			
휴 학 기 간 (미 기 재)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휴학사유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 유 필	대학원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20 년 월 일		인		

◆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별지 제5호 서식]

복학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 택		
			휴 대 폰		
복 학 사 유	<input type="checkbox"/> 제대(제대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가사회복 <input type="checkbox"/> 건강회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휴 학 기 간 (미 기 재)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학기간)				
<p>위와 같은 사유로 복학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①</p> <p>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경 유 필	등록확인	예비군연대(男) (후생관 4층)	대학원 접수 일자	전산입력확인	
	①	①	20 년 월 일	①	

◆ 제출서류 (병역휴학자):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전역증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별지 제6호 서식]

자퇴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		학번				
성명		학기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우)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사유						
등록금환불 여부(미기재)	<input type="checkbox"/> 환불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환불 미대상자	환불비율	등록금의 _분의 _			
위와 같은 사유로 자퇴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과주임교수: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유필	등록금 환불대상 확인	중앙도서관	학생증반납	예비군연대(男) (후생관 4층)	대학원 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인	인	인	인	20 년 월 일	인

◆ 제출서류 (등록금환불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별지 제7호 서식] 성적포기신청서 (삭제 2014.10.31.)

[별지 제8호 서식]

타대학원학점인정신청서 (신입생용)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인 정 학 기		20 학년도 제 학기											
학 과				학기차		학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학위취득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중퇴					전 화 번 호							
수 학 기 간	~ (학기간)					대 학 명							
						국 가 명							
타 대학원 이수사항													
타 대학원 이수과목					이 대학원 학점 및 성적인정 교과목					비고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인정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학점계					학점계								
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에 의거 타대학원 학점 이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20 년 월 일 전공주임교수: 인 신 청 인: 인 </div>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해당 대학원) 1부
2. 해당학과 교수회의록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별지 제8호의 2서식]

타대학원학점인정신청서 (재학생용)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인 정 학 기					20 학년도 제 학기					
학 과				학기차			학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교류협정 <input type="checkbox"/> 유학 <input type="checkbox"/> 연수					전화번호				
수학기간	~ (학기간)					대학명				
						국가명				
타 대학원 이수사항										
타 대학원 이수과목					이 대학원 학점 및 성적인정 교과목					비고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인정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학점계					학점계					
<p>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에 의거 타대학원 학점 이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전공주임교수 :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 청 인 : ㉠</p> <p style="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p>										

- ※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해당 대학원) 1부
 2. 해당학과 교수회의록 1부(타대학원 이수과목과 이 대학원 교과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별지 제9호 서식]

논문제목변경신청서		담당	탐장	부원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전화번호			
당 초 논문 제목					
변 경 된 논문 제목					
<p>위와 같이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em;">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p> <p style="text-align: right;">지 도 교 수: Ⓜ</p> <p style="text-align: right;">전공주임교수: Ⓜ</p> <p>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p>					

[별지 제10호 서식]

지도교수변경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 공		학번		성 명	
지도교수 변경 사항					
변 경 전	①	변 경 후	①		
변 경 일 자					
변 경 사 유					
<p>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①</p> <p style="text-align: right;">전공주임교수: ①</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p>					

[별지 제11호 서식]

조기졸업이수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		학기차		학번		성명							
<p>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 시행세칙 제15조의 2 ②항에 의거 조기졸업이수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이수 하고자 하는 학기차</td> <td style="padding: 5px;">기준학점 초과 신청 학점 (6학점 배분)</td> </tr> <tr> <td style="padding: 5px;">() 학기차</td> <td style="padding: 5px;">() 학점</td> </tr> <tr> <td style="padding: 5px;">() 학기차</td> <td style="padding: 5px;">() 학점</td> </tr> </table>								이수 하고자 하는 학기차	기준학점 초과 신청 학점 (6학점 배분)	() 학기차	() 학점	() 학기차	() 학점
이수 하고자 하는 학기차	기준학점 초과 신청 학점 (6학점 배분)												
() 학기차	() 학점												
() 학기차	() 학점												
<p>20 년 월 일</p> <p>신 청 인: Ⓜ</p> <p>전공주임교수: Ⓜ</p>													
<p>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p>													

[별지 제12호 서식]

논문 연구 계획서

교육대학원

전 공		성 명		학 번		학기차	4학기
논문 제목							
○ 연구 개요 (연구목적, 필요성, 방법 등)							
○ 참고문헌							
위와 같이 석사학위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 출 자: ①
◆ 논문발표(공개발표) 예정 학기: 5학기							
지도교수 의 견							

20 년 월 일

지도교수: ①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14.10.31.)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전공		학번		성명	
지도교수	소속 전공				성명	
논문제목	국문					
	영문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에 있어 논문대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서명)
 확인자: (서명)
 (지도교수)

교육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14.10.31.)

학위논문대체 이수 () 학위논문대체 변경 ()		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		학번													
성명		학기차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	자택) 휴대폰)														
<p>1. 학위논문 대체·인정 신청</p> <p>상기 본인은 교육대학원 시행세칙 제60조의 2(학위논문대체인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위논문 대체(인정)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20%;">학위과정</th> <th style="width: 40%;">학위논문대체(인정) 신청</th> <th style="width: 40%;">수강신청 과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석사학위과정</td> <td><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2과목(6학점)이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d> </tr> </tbody> </table> <p>2. 학위논문 대체이수 변경 신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0%;">변경 전</th> <th style="width: 45%;">변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위과정</td> <td> <input type="checkbox"/> 학위청구논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이수 </td> <td> <input type="checkbox"/> 학위청구논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이수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신청인: ① 지도교수: ② (변경신청자) </p> <p style="margin-top: 20px;">교육대학원장 귀하</p>				학위과정	학위논문대체(인정) 신청	수강신청 과목	석사학위과정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2과목(6학점)이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위과정	<input type="checkbox"/> 학위청구논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이수	<input type="checkbox"/> 학위청구논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이수
학위과정	학위논문대체(인정) 신청	수강신청 과목													
석사학위과정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2과목(6학점)이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위과정	<input type="checkbox"/> 학위청구논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이수	<input type="checkbox"/> 학위청구논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이수													
전산입력		년 월 일													

III. 경영대학원

1. 목적

본 대학원은 국제경영의 이론과 실제 및 외국어와 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연구, 교수하여 국제화 세계화의 새로운 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경영 전문인 및 해외지역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인류의 상호이해 증진에 공헌함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2.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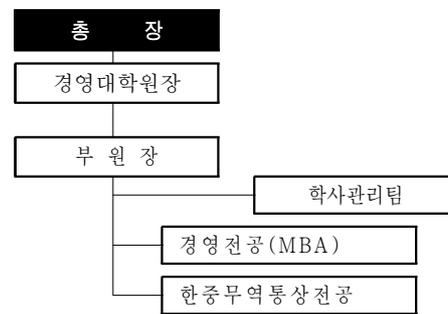
- 1959. 12. 24 학교법인 성지학원 설립 인가
- 1981. 12. 26 부산외국어대학 설립 인가
- 1982. 3. 12 부산외국어대학 개교
- 1994. 10. 21 국제경영대학원 설치 인가
90명 정원으로 국제경영 전공, 국제 무역 전공, 경영정보 전공 등 3개 전공분야 인가
- 1995. 3. 2 국제경영대학원 개원
초대 국제경영대학원장 오경희 박사 취임
- 1996. 11. 2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으로 확대 개편
2개 전공(아주지역 전공,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 전공) 신설
- 1996. 11. 2 '97학년도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 학칙변경 인가에 따라 입학정원 36명에서 66명으로 증원
- 1997. 8. 29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10명)
- 1997. 10. 25 '98학년도 정원 조정 인가와 관련, 5개 전공 입학정원 40명으로 조정
- 1998. 1. 1 제2대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 류혜민 박사 취임
- 1998. 2. 20 석사학위수여(경영학 석사(MBA) 14명)
- 1998. 8. 21 석사학위수여(경영학 석사(MBA) 7명)
- 1999. 2. 20 석사학위수여(경영학 석사(MBA) 4명)
- 1999. 4. 1 제3대 원장 김수일교수 취임

- 1999. 8. 20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2명)
- 1999. 11. 전공개편(아주지역, 중동·북아프리카지역 전공 폐지, 국제법무, 동북아시아지역, 동남·남아시아지역, 중동·중앙아시아지역, 북중남미지역, 유럽지역전공 신설)
- 2000. 2. 23 석사학위수여(경영학 석사(MBA) 5명)
- 2000. 8. 18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1명, 지역학석사(MS) 1명)
- 2001. 2. 16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4명)
- 2001. 8. 1 전공개편(국제법무, 동북아시아지역, 동남·남아시아지역, 중동·중앙아시아지역, 북중남미지역, 유럽지역전공 폐지,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북중남미유럽지역, 중동아프리카지역 신설)
- 2001. 8. 17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1명, 지역학석사(MS) 1명)
- 2002. 2. 15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3명, 지역학석사(MS) 1명)
- 2002. 8. 16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2명, 지역학석사(MS) 1명)
- 2003. 2. 21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3명, 지역학석사(MS) 1명)
- 2003. 8. 14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4명, 지역학석사(MS) 4명)
- 2003. 10. 1 전공개편(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북중남미유럽지역을 아주지역, 미주유럽지역으로 전공명 변경, 국제선교학 전공 신설)
- 2004. 2. 20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2명, 지역학석사(MS) 1명)
- 2004. 8. 20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1명, 지역학석사(MS) 2명)
- 2005. 2. 18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6명)
- 2005. 8. 19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5명, 지역학석사(MS) 1명)
- 2005. 10. 20 2006학년도 정원 조정인가와 관련, 입학정원 25명으로 조정

- 2006. 2. 17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4명, 지역학석사(MS) 5명)
- 2006. 2. 20 제6대 원장 정희자 박사 취임
- 2006. 5. 10 2007학년도 정원 조정인가와 관련 입학정원 20명으로 조정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에서 국제통상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전공개편(국제경영, 국제무역, 경영정보, 아주지역, 미주유럽지역, 중동 아프리카지역, 국제선교학 전공 폐지
중국통상경영, 아세안 통상경영전공 신설)
- 2006. 7. 1 제7대원장 김동률 박사 취임
- 2006. 8. 18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1명)
- 2007. 2. 13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1명, 지역학석사(MS) 1명)
- 2007. 8. 17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1명)
- 2008. 2. 13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1명, 지역학석사(MS) 1명)
- 2008. 9. 1 제8대 원장 정철호 박사 취임
- 2008. 10. 15 국제통상대학원에서 국제통상경영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 2009. 8. 21 석사학위수여(지역학석사(MS) 1명)
- 2010. 2. 26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1명)
- 2010. 8. 19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3명)
- 2011. 3. 9 제9대 원장 최성철 박사 취임
- 2011. 8. 19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8명)
- 2012. 2. 24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9명)
- 2012. 8. 17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6명)
- 2013. 2. 22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11명)
- 2013. 8. 23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7명)
- 2014. 2. 21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11명)
- 2014. 8. 1 제10대 원장 황귀연 박사 취임
- 2014. 8. 22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6명)
- 2014. 11. 1 제11대 원장 백미혜리 박사 취임
- 2014. 2015학년도 편제 개편에 따라 입학정원 40명으로 조정
- 2015. 2. 13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6명)
- 2015. 8. 21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5명)
- 2015. 10. 1 제 12대 원장 정철호 박사 취임
- 2015. 11. 3 2016학년도 편제 개편에 따라 입학정원 20명으로 조정
국제통상경영대학원에서 경영대학

- 원으로 명칭 변경
전공개편(글로벌골프전공 폐지, 한중무역통상경영전공을 한중무역통상전공으로 명칭 변경, 경영전공(MBA)신설)
- 2016. 2. 19 석사학위수여(경영학석사(MBA) 12명)

3. 조직 기구표



4. 경영대학원 시행세칙

제정 : 2005. 11. 01.
 개정 : 2006. 09. 01, 2007. 05. 22, 2008. 10. 15, 2009. 12. 08, 2011. 7. 29, 2013. 12. 04, 2014. 10. 31, 2015. 05. 08, 2015. 12.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이 학칙’이라 한다)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이하 ‘이 대학원’이라 한다) 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5)

제2조(적용) 이 대학원의 학사업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3조(입학지원자격) 이 학칙 제10조에 따라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4조(입학지원서류) 이 학칙 제11조에 따라 이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의 전형료와 함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이 대학원 소정 양식) 1부
 -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 3. 대학성적증명서 1부
 - 4. 재직증명서(공무원 및 기업체근무자에 한함)
 - 5.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 6.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5조(입학전형) ① 이 학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대학원 입학시험은 매년 2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항목별 전형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서류심사: 대학성적 및 경력 심사
 - 2. 면접평가: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식, 대학원 과정 이수를 위한 적성, 인성 및 지원동기 등에 대하여 평가
- ③ 제2항의 항목별 평가 및 배점기준과 특별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개정 2008.10.15, 2011.07.29)
- 제6조(면접위원 위촉) 경영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각 전공의 강의담당 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면접평가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08.10.15)
- 제7조(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구성) 원장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8조(합격기준) 합격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8.10.15)
- 제9조(합격결정) 원장은 입학정원과 지원자의 전형 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개정 2008.10.15)
- 제10조(편입학지원자격) 이 학칙 제15조에 따라 이 대

학원 편입학지원 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일정기간 수학한 자 또는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제11조(편입학지원서류) 이 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함께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 1. 편입학 원서(소정양식) 1부
- 2. 전적대학원 수료(재학)증명서 1부
- 3.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 4.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 5.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편입학전형) 이 대학원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형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8.10.15)

제13조(재입학) ① 이 학칙 제16조에 의하여 제적 또는 자퇴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10.15., 2013.12.04.)

②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하며 매 학기말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해야 하고, 정원여석 초과 시 총 성적 평점평균순에 의하여 선발한다.(개정 2011.07.29)

③ 재입학은 제적 후 6개월(1학기)이상 경과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④ 재입학은 원적 전공에 한하여 허가하며, 기 취득학점은 수료(이수)학점에 통산한다. 단, 원적 전공이 폐과된 경우 학생의 기 이수과목을 참작하여 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10.15)

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1.07.29., 2014.10.31)

제14조(학력조회) 입학허가가 난 후 소정의 등록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적 대학교(원)의 학력을 입학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회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5조(수업연한) ①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이 학칙 제17조에 따라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개정 2008.10.15)

②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1.07.29)
1. 제29조 제2항에 의거 학기당 기준 학점 초과 취득자(신설 2011.07.29)
 2. 매학기 성적 평균평점 4.3 이상인 자(신설 2011.07.29)
 3. 재학기간 중 본인의 연구실적이 공인된 학회지에 단독으로 게재되거나, 연구실적의 탁월성이 인정되는 자(신설 2011.07.29)
- 제15조의2(조기졸업 지원 자격 및 절차) ① 조기졸업 지원 자격은 3회의 정규등록과 3학기 차까지 전공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제15조 제3항의 각 호를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신설 2011.07.29)
- ② 제15조 2의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3학기차 말에 조기졸업 이수신청서(별지 13호 서식)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07.29)
- 제16조(재학연한) ①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이 학칙 제18조에 따라 4년(8학기)으로 한다.
- ②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한다.
-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재학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및 수료
- 제17조(등록) ① 이 대학원 학생은 이 학칙 제19조에 따라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1.07.29)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10.15., 2011.07.29)
1. 1 학점부터 3 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 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제18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 학칙 제20조에 따라 등

- 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1.07.29)
- ② (삭제 2011.07.29)
- ③ (삭제 2011.07.29)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반환 사유”라 한다)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1.07.29)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개정 2011.07.29)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개정 2011.07.29)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신설 2011.07.2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개정 2011.07.29)
- 제19조(휴학의 조건) ① 휴학은 재학중 입영, 질병, 가사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 ② 휴학은 병역휴학과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 ③ 휴학은 이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 단, 해외발령, 지방발령, 군입대,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등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제20조(휴학의 기간 및 신청 시기) ① 이 학칙 제21조에 따라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로 하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07.29)
1. 병역휴학
 2. 해외발령, 타지방발령,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개정 2011.07.29)
 3. (삭제 2011.07.29)
- ③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에는 당해학기 개강일 이전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학사유 발생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경과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개정 2011.07.29)

제21조(휴학의 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신청서’(별지 2호 서식)에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사유서, 병역징집 영장,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10.15, 2011.07.29)

②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휴학연장신청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07.29)

③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사유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휴학사유변경신청서’(별지 4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10.15., 2011.07.29)

제22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을 하여야 하며 매학기 등록기간에 ‘복학신청서’(별지 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10.15, 2011.07.29)

②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승인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11.07.29)

③ 병역휴학자의 전역 일자가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내인 경우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후라도 휴학기간 중의 수업 등으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상 수업이 가능한 경우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의2(복학시 등록금) ①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조선철 2011.07.29)

②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군입대를 제외한 사유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대체하여 인정한다.(개정 2011.07.29)

제23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서’(별지 6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07.29)

제24조(제적) 이 대학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학칙 제17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2. 학칙 제21조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징계된 자.(개정 2008.10.15)

제25조(수료) ① 이 학칙 제25조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수료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전공기초 및 외국어 9학점 이상, 전공선택과목에서 15학점 이상으로 총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10.15., 2015.05.08)

제 5 장 교과와 학점

제26조(교과과정의 편성) ① 이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이 학칙 제26조에 따라 전공기초 및 외국어, 전공선택, 논문대체과목 및 논문연구로 구분한다.(개정 2008.10.15., 2015.05.08)

② 각 과목의 단위 학점은 3학점, 논문연구는 2학점으로 한다.(개정 2008.10.15., 2014.10.31.)

③ 교과과정은 2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원장은 교과과정의 편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10.15)

④ 교과과정은 이 대학원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전공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⑤ 교과과정은 학부의 교과과정과 적절한 연계성을 갖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27조(교과과정의 이수) ① (삭제 2008.10.15)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전공기초(3학점 이상) 및 외국어(3학점 이상) 영역에서 9학점, 전공선택영역에서 15학점으로 총 24학점으로 한다.(개정 2008.10.15., 2011.07.29., 2015.05.08)

③ 논문연구는 학위과정 마지막 학기에 논문지도 교수가 담당하고, 2학점으로 한다. 단, 논문연구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전공기초 및 외국어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그 초과 학점은 전공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10.15., 2015.05.08)

⑤ 논문대체과목은 최저이수학점(24학점) 취득

후 4-5학기차에 걸쳐 2과목(6학점)을 이수하고 그 취득학점이 B학점(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논문 대체과목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08.10.15.)

⑥ 논문연구과목의 평가는 합격(P), 불합격(F)으로 한다.(신설 2015.05.08.)

제28조(교과목개설 및 강의) ① 교과목은 학기차 구분 없이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원장은 동일과목을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08.10.15)

② 다음 학기 개설 과목은 소정의 기한 내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학기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소정의 기일 내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강 학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3명 미만인 경우에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신설 2013.12.04)

제 29조(수강신청) ① 다음 학기 수강은 소정의 기간 내에 우리 대학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② 학기당 신청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08.10.15)

제30조(성적포기) (삭제 2014.10.31.)

제31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과목과 전공이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전임강사도 교과목 담당교수가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타 대학원과의 학점인정) ① 이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이 대학원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10.15, 2011.07.29)

②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신청서(별지 8호 서식)
2. 해당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 ③ 제1항에 따라 6학점 이상 인정을 받았을 경우,

한 학기를 등록 단축할 수 있다.

④ 원장이 인정하는 타 대학원과의 협정에 의하여 학점교환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대학원 학생이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학점(2과목)까지 인정한다. 단, 1학기에 3학점(1과목)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08.10.15)

⑤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단위학점이 이 대학원과 상이한 경우 이 대학원의 단위학점에 준하여 인정한다.

제 6 장 자격시험

제33조(자격시험의 구분) 이 학칙 제32조에 따라 이 대학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한다.(개정 2008.10.15)

제34조(응시자격) ①(삭제 2008.10.15)

② 종합시험은 3학기,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으로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③(삭제 2014.10.31.)

제35조(실시시기) ①(삭제 2008.10.15)

② 종합시험은 매학기 실시하며 그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10.15)

제36조(시험과목) ①(삭제 2008.10.15)

② 종합시험은 전공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공기초과목 중 1과목을 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10.15)

제37조(자격시험 대체인정) ①(삭제 2014.10.31.)

제38조(시험위원과 평점) 종합시험은 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담당하며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개정 2008.10.15)

제39조(재시험)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08.10.15, 2011.07.29)

제 7 장 학위논문

제40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이 학칙 제3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논문연구계획서는 4학기 초에 연구제목, 목적,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

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0.15, 2011.07.29)

② 제1항에 의해 제출한 논문연구계획서상의 논문제목이 변경될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논문제목변경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07.29.)

③ 논문연구계획서와 함께 학위논문윤리준수서약서(별지 1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4.10.31.)

제42조(학위논문 심사 청구) ① 학위논문 심사 청구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학위청구논문심사(발표)신청서’(별지 10호 서식)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5, 2011.07.29)

② 학위논문 대체·인정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연구보고서 심사 신청서’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5)

제43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역할) ① 지도교수는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이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10.31.)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의 연구 및 작성을 지도한다.

③ 논문 지도교수로 선정되어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논문 지도교수에게는 논문심사비를 지급한다.

제44조(지도교수의 위촉과 변경) ① 논문 지도교수는 제3학기 차에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여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0.15)

② 위촉된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변경신청서’(별지 11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07.29)

③ 논문지도교수의 담당학생 수는 매학기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1.07.29)

제45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이 학칙 제36조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10.15, 2011.07.29)

② 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외부인사는 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위의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전임강사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이 박사학위 미소지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 중 1인은 주심으로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단,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제45조의2(논문작성 사용언어)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으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조신설 2011.07.29)

제46조(논문작성 체제 및 방법) 논문의 규격, 체제 및 작성 방법 등은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의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논문 심사위원 변경)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기간 중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논문심사 기간)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 후 6개월 이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공개발표) 논문은 심사위원 및 관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1회 이상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논문평가 및 심사횟수) ① 논문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연구방법, 내용의 수준, 체제 및 학문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A, B, C, D로 평가하되, B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 횟수는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10.15)

제51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등을 기준으로 1회 이상 시행하며,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제52조(구술시험위원) 구술시험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겸임한다.

제53조(논문심사구술시험 판정) 논문심사와 구술시

험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제54조(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구술 시험의 결과를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체 없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논문제출 시한) 학위논문은 석사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논문제출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6조(논문제출 부수) 합격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 이 서명한 3부를 포함하여 3부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7.29., 2013.12.04)

제57조(논문심사자료 제출) 이 대학원 위원회는 논문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한 문헌 또는 부분, 모형, 표본 등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8 장 학위수여

제58조(학위수여 요건) ① 이 대학원의 학위수여 요건은 이 학칙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공기초 및 외국어 9학점, 전공선택 15학점으로, 총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개정 2008.10.15., 2015.05.08)
2.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08.10.15)
4. 5학기 이상 정규 등록자
5. 석사학위청구 논문이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학위논문대체에 관한 사항에 합당한 요건을 충족한 자

제59조(학위논문대체인정)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대체·인정 받고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 1을 충족할 경우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 외에 논문대체 과목 2과목(6학점)을 이수하고, 그 취득 평점이 과목별 3.0이상 인 경우(개정 2008.10.15)
2. 이 대학원 재학 기간 중 공공기관(관공서, 기업체, 교회)에서 인쇄 제본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이 대학원 재적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며 경제활동 또는 선교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이 대학원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해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초에 논문대체과목 이수신청서(별지 14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심사료와 연구보고서 2부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10.15., 2014.10.31.)

제60조(학위종별) 이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영학석사: 한중무역통상경영전공(개정 2008.10.15., 2011.07.29., 2014.10.31., 2015.05.08)

골프경영학석사: 글로벌골프전공(신설 2014.10.31.)

제61조(학위신청 구비서류) (삭제 2008.10.15)

제62조(학위수여 사정) 위원회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을 실시하여 학위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10.15)

제63 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의 시기는 2월과 8월에 시행하며, 연 2회로 한다.

제64조(학위복장) 석사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 색상은 다음과 같다.

- ① 후드 색상
 - 가. 경영학 - 담갈색
 - 나. <삭제>
 - 다. <삭제> (삭제 2013.12.04.)
- ② 후드 내부의 바탕 색상은 교색으로 한다.(개정 2014.10.31.)
- ③ 학위모의 수술 색상은 학위종별 후드 색상으로 한다.

제 9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65조(공개강좌) ① 이 학칙 제45조에 따라 공개강좌의 과정명, 과목 또는 내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② 공개강좌 수강을 원하는 자는 실비를 납부하여

야 한다.

③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6조(연구생) ① 이 학칙 제46조에 따라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③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④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한다.(개정 2011.07.29.)

② 수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한 수강료는 과오납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신설 2014.10.31.)

제74조(수료) ① 이 대학원 위원회는 수료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료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별지 12호 서식)를 교부한다.

- 1.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출석자
- 2. 2학기 이상 등록자

제75조(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및 금액) ① 장학금이라 함은 고위 공직자 및 사회 저명인사에게 지급하는 학업격려금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학업격려장학금 및 공로장학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업격려장학금 : 고위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저명인사로서 원장이 추천한 자
- 2. 공로장학금 : 이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원장이 추천한 자

③ 장학금은 당해 년도 모집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원장이 추천하여 지급하며, 장학금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07.29)

④ 장학금 수혜자가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로 이 과정에 더 이상 수학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 10 장 최고국제경영자과정

제67조(최고국제경영자과정 설치) 이 학칙 제45조에 따라 이 대학원에 최고국제경영자과정(이하 “이 과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제68조(모집정원) 이 과정의 모집정원은 80명 내외로 한다

제69조(지원자격) 이 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기업체의 경영자 및 고위 임직원
- 2. 상위직 공무원 및 영관급 이상의 군장교
- 3. 사회지도급 인사
-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0조(지원서류) 이 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제71조(전형방법) 이 과정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제72조(합격결정)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개정 2007.03.01, 2011.07.29)

제73조(수강기간 및 등록) ① 수강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3월 및 9월에 개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장 장학금 및 상벌

제76조(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 ① 이 학칙 제47조에 따라 이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우수장학금, 학업격려장학금, 교직원복지장학금, 모교장학금, 공로장학금, 외국인장학금, 근로자복지장학금, 기독교인복지장학금, 가족장학금, 인턴쉽장학금, 법인재직장학금, 면학장학금으로 한다. (개정 2009.12.08, 2011.07.29)

② 제1항의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1.07.29)

③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 타 장학금의 수혜로

성적장학금을 포기할 경우 차석이 승계한다.(신설 2011.07.29)

제77조(지급대상 및 내용) (삭제 2011.07.29)

제78조(지급제한) ①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신설 2011.07.29)

-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
- 2. 휴학한 자
- 3. 정규학기(5학기)를 초과하는 자(신설 2013.12.04.)

② 장학금은 중복 지급을 하지 않으며,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유리한 쪽 하나만 지급한다. 단, 인턴쉽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1.07.29)

제79조(연구보조금) 연구능력이 현저히 뛰어나고 국내·외 연구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일정부분의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이 대학원 구 학칙의 하부규정인 학칙 시행세칙, 학사내규, 최고국제경영자과정 운영내규는 폐지한다.

②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이 대학원의 재적생에게도 본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7조 제9항의 연구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은 2006학년도 9월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08.10.14. 대학원 위원회 31차 회의)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대학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대학원 학칙에 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9.12.08. 대학원 위원회 39차 회의)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에 관한 변경 사항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04.)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0조 성적포기 규정 폐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5.08.)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0조는 2015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 변경 및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 재적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1. 한중무역통상경영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한중무역통상전공에 재적한 것으로 한다.
- 2. 글로벌골프전공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글로벌골프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등록금 반환 기준(제18조 제4항 관련)(개정 2011.07.29)

1. 당해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2>

복학시 등록금(제22조의2 제2항 관련)(개정 2011.07.29)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대체·인정한다.

휴 학 일 시	대체·인정 금액
수업일수 1/4 이전	등록금의 전액
수업일수 1/4 경과 후부터 수업일수 1/3 경과 전	등록금의 2/3
수업일수 1/3 경과 후부터 수업일수 1/2 경과 전	등록금의 1/2
수업일수 1/2 경과 후	등록금의 전액납부필

[별표 3]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내용(제77조 관련)(신설 2011.07.29.)(개정 2013.12.04., 2014.10.31., 2015.12.31.)

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비고
성적우수 장학금	재학생수(신입생 제외)의 5% 범위 내에서 직전학기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	등록금의 1/3	
학업격려 장학금	교직원 및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등록금의 1/3	
교직원복지 장학금	이 대학교 교직원	등록금 전액	
	이 대학교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록금의 2/3	
모교장학금	이 대학교 졸업자 및 AMP 수료자	등록금의 1/3	
공로장학금	이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원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의 1/3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학생	입학금 1/2 및 등록금의 1/2	
근로자복지 장학금	입학 시 일반기업체에 근무 중인 근로자로 이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	등록금의 1/3	
기독교인 복지장학금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목사, 전도사로 시무중인 자	등록금의 1/3	
가족장학금	이 대학원에 가족 2명 이상 재학 시 1인의 학생	등록금의 1/3	
인턴십장학금	재학생으로서 인턴십 근무자	별도금액	
법인재직장학금	학교 법인 교직원	등록금의 1/2	
면학장학금	가계곤란자로서 원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의 1/3	

1. 각종 장학금 지급에서 입학금은 제외 함.(이 대학교 교직원은 제외)
2. 외국인장학금은 본교 출신 외국인의 경우 입학금 전액 및 등록금의 1/2 지급.

[별지 제1호 서식]

재 입 학 원 서

전 공		성 명	
학 번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이 메 일 주 소	
전 화	자 택) 휴대폰)		
주 소	(우) -		
제 적 일 자		제 적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유로 제적되었던 바 20 학년도 제 학기에 재입학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①</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50px;">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 첨부서류: 성적증명서 -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별지 제2호 서식]

휴학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		학번			
성명		학기차			
주민등록번호		E - Mail			
주소	(우)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휴학사유	<input type="checkbox"/> 병무 <input type="checkbox"/> 가사사정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휴학기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①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유필	경리팀 (등록확인)	중앙도서관	예비군연대(男)	대학원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①	①	①	년 월 일	①

◆ 병무휴학자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별지 제3호 서식]

<h2 style="margin: 0;">휴학연장신청서</h2>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 - 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연 장 전 사 유		연 장 전 기 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연 장 사 유	<input type="checkbox"/> 가사사정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 장 기 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p>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인: ㉠</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50px; 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경 유 필	총무팀(등록확인)	대학원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	년 월 일		㉠	

[별지 제4호 서식]

휴학사유변경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휴학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현역입영(육군·해군·공군) <input type="checkbox"/> 공익근무요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 대 일		제대예정일			
휴 학 기 간 (미기재)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휴학사유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인: 인</div>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유필	대학원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20 년 월 일		인		

◆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별지 제5호 서식]

복학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복 학 사 유	<input type="checkbox"/> 제대(제대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가사회복 <input type="checkbox"/> 건강회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휴 학 기 간 (미기재)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학기간)				
위와 같은 사유로 복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 유 필	등록확인	예비군연대(男) (후생관 4층)	대학원 접수 일자	전산입력확인	
	인	인	20 년 월 일	인	

◆ 제출서류 (병역휴학자):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전역증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별지 제6호 서식]

자퇴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진공		학번				
성명		학기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우)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사유						
등록금환불 여부(미기재)	<input type="checkbox"/> 환불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환불 미대상자	환불비율	등록금의 _ 분의 _			
<p>위와 같은 사유로 자퇴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50px;">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경유필	등록금 환불대상 확인	중앙도서관	학생증반납	예비군연대(男) (후생관 4층)	대학원 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인	인	인	인	20 년 월 일	인

◆ 제출서류 (등록금환불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별지 제7호 서식]

성적포기신청서				담당	팀 장	부원장	원 장	
전 공		학 번		학기차				
성 명		연 락 처	☎ ()					
			H/P					
성적 포기 내용							비고	
NO	포기과목	교과목번호	이수년도/학기	구분영역	학점수	취득성 적		
1								
2								
3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적포기는 3학기차 부터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확인기간에 한하여 포기신청을 하여야 함. 2. 성적 포기로 인한 해당학기의 성적순위 및 장학순위 등의 변동은 인정하지 않음. 3. 성적 포기한 과목은 복원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p>※ 위의 취소과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복원되지 않음을 숙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 청 인: Ⓜ</p> <p style="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p>								
대학원 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20 년 월 일				Ⓜ				

[별지 제8호 서식]

타대학원학점인정신청서 (신입생용)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인 정 학 기					20 학년도 제 학기					
학 과				학 기 차			학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학위취득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중퇴				전화번호					
수 학 기 간	~ (학기간)				대 학 명					
					국 가 명					
타 대학원 이수사항										
타 대학원 이수과목					이 대학원 학점 및 성적인정 교과목					비고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인정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학점계					학점계					
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에 의거 타대학원 학점 이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인: ㉠</div> <div style="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div>										

※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해당 대학원) 1부
 2. 해당학과 교수회의록 1부

[별지 제9호 서식]

논문제목변경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		학번			
성명		전화번호			
당초 논문제목					
변경된 논문제목					
<p>위와 같이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지 도 교 수: 인</p> <p>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p>					

[별지 제11호 서식]

지도교수변경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		학번		성명	
지도교수변경사항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일자					
변경사유					
<p>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p> <p>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p>					

[별지 제12호 서식]

최제 000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1900년 00월 00일

위 사람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기간 중 본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국제경영
자과정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위 인정에 의하여 이 수료증을 수여함.

20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14.10.31)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전공		학번		성명	
지도교수	소속 전공				성명	
논문제목	국문					
	영문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에 있어 논문대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서명)

확인자: (서명)

(지도교수)

경영대학원장 귀하

IV. 통역번역대학원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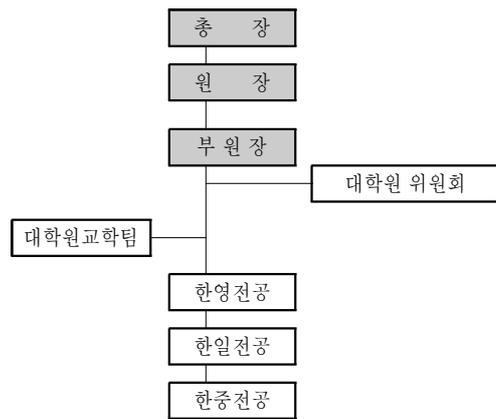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은 국제사회에 대한 전문지식과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최고 수준의 통역·번역전문인력 및 외국어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1959. 12. 24	학교법인 성지학원 설립 인가	2006. 8. 18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5명, 통역번역학석사 6명)
1981. 12. 26	부산외국어대학 설립 인가	2007. 2. 13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5명, 통역번역학석사 3명)
1982. 3. 12	개 교	2007. 8. 17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9명, 통역번역학석사 11명)
2002. 10. 31	통역번역대학원 설치 인가 통역번역학 석사학위과정 한·영, 한·일, 한·중, 한·영·일, 한·영·중(5개 전공, 40명)	2008. 2. 13	석사학위수여(통역번역학석사 5명)
2002. 11. 1	초대 통역번역대학원장 이용성 박사 취임	2008. 3. 3	제3대 통역번역대학원장 진광호 교수 취임
2003. 3. 1	신임교수 임용 한영전공: 류현주 교수 한일전공: 이유아 교수 한중전공: 김아영 교수	2008. 8. 22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4명, 통역번역학석사 6명)
2003. 3. 3	통역번역 대학원 개원	2009. 2. 20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11명, 통역번역학석사 2명)
2003. 6.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이하 BEXCO)자매 결연	2009. 8. 21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20명, 통역번역학석사 8명)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2010. 2. 26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6명, 통역번역학석사 4명)
2004. 3. 1	신임교수 임용 한영전공: 김도훈 교수 한일전공: 미즈누마 교수	2010. 3. 1	제4대 통역번역대학원장 고영근 교수 취임
2005. 8. 19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4명, 통역번역학석사 4명)	2010. 8. 20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3명, 통역번역학석사 3명)
2006. 2. 17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3명, 통역번역학석사 4명)	2010. 2. 26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6명, 통역번역학석사 4명)
2006. 2. 20	제2대 통역번역대학원장 임은규 교수 취임	2011. 2. 18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5명, 통역번역학석사 5명)
		2011. 8. 19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5명, 통역번역학석사 4명)
		2012. 2. 6	제5대 통역번역대학원장 이정원 교수 취임
		2012. 2. 24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2명, 통역번역학석사 3명)
		2012. 8. 17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4명, 통역번역학석사 7명)
		2013. 2. 22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1명, 통역번역학석사 1명)
		2013. 8. 23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6명, 통역번역학석사 8명)
		2014. 2. 21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 3명, 통역

- 번역학석사 2명)
- 2014. 3. 1 제5대 통역번역대학원장 하수권 교수 취임
- 2014. 8. 1 제6대 통역번역대학원장 백미혜리 교수 취임
- 2014. 8. 22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13명, 통역번역학석사13명)
- 2015. 2. 13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12명, 통역번역학석사8명)
- 2015. 8. 21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5명, 통역번역학석사7명)
- 2016. 1. 1 제7대 통역번역대학원장 김창호박사 취임
- 2016. 2. 19 석사학위수여(통역번역학석사5명)
- 2016. 8. 19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4명, 통역번역학석사17명)
- 2017. 2. 17 석사학위수여(번역학석사18명, 통역번역학석사12명)

3. 조직기구표



4. 행정부서

- 업무현황

부서명	담당 업무	구내 전화
교무지원팀	신입생선발, 강의시간표작성, 교과과정편성, 강의실배정, 강의평가, 강의료, 성적, 휴·복학 학적변동, 장학, 학생관련 업무 등	5145

5. 학생선발

- 전공 및 정원

과 정	전 공	입학정원
2개언어 (A-B)과정	한영전공 한일전공 한중전공	40명

- 전형방법

- 가) 서류심사
- 나) 1차 필기시험

2개언어 (A-B)과정	시간 (분)	배점
A언어↔B언어번역	60	60
A언어↔B언어청취쓰기	60	40
(A언어청취→B언어쓰기)	30분	20점
(B언어청취→A언어쓰기)	30분	20점
계		100

다) 2차 구술시험 및 면접

2개언어 (A-B)과정	시간 (분)	배점
B언어구술	1인당 3-5분	100
면접	-	50
계		150

7. 통역번역대학원 시행세칙

제정 : 2005. 10. 20.

개정 : 2006.2.7, 2006. 8. 8, 2006.10. 9, 2007.10.24.
2010. 9. 14, 2010. 12.7, 2011.7.29, 2012. 11. 1,
2013. 12. 4, 2014. 10. 31, 2015. 5. 8, 2015. 1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이 학칙”이라 한다)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이하 “이 대학원”이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대학원의 학사업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이대학원위원회”라 함은 대학원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2.11.1)

제 2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4조(입학지원자격) 이 학칙 제10조에 의거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동 예 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5조(입학지원서류) 이 학칙 제11조에 의거 이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정의 전형료와 함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이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성적증명서
4. 재직증명서(현직교사 및 공무원에 한함)
5.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6. 회의통역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7.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입학전형) ① 생략

1. (삭제 2015.5.8)
2.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

과정	구분	2개 언어(A-B) 과정	
		과 목	배점
필기시험 (1차시험)	1. AB, BA번역시험		60
	2. AB, BA청취시험		40
	※ A: 한국어, B: 외국어		
	계		100
구술시험 및 면접 (2차시험)	1. 외국어구사력(단, 외국어가 모 국어인 경우 한국어 구사력) 시험 및 통역능력 구술시험		100
	2. 면접		50
	계		150
	단,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② 제1항의 요소별 평가 및 배점 기준은 이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전공구술시험 및 면접위원 위촉) 통역번역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각 전공의 강의담당 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전공구술시험 및 면접 위원을 위촉한다.

제8조(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구성) 원장은 입학전형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합격기준) 합격기준은 이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합격결정) 원장은 입학정원과 지원자의 전형 결과를 이 대학원 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

제11조(편입학지원자격) 이 학칙 제15조에 의거 이 대학원 편입학지원 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일정기간 수학한 자 또는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제12조(편입학지원서류) 이 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함께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1. 편입학 원서(소정양식)
2. 전적대학원 수료(제학)증명서
3.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4. 재직증명서(현직교사 및 공무원에 한함)
5.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6. 회의통역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7.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편입학전형) 이 대학원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

형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재입학) ① 이 학칙 제16조에 의거 제적 또는 자퇴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별지 제1호 서식)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하며 매 학기말 소정의 기일내에 신청해야 하고, 정원여석 초과 시 총 성적 평점평균 순에 의하여 선발한다(개정 2011. 7. 29).

③ 재입학은 제적 후 6개월(1학기)이상 경과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④ 재입학은 원적 전공에 한하여 허가하며, 기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15조(학력조회) 입학허가가 난 후 국내외 대학의 학력을 입학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회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6조(수업연한) ①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이 학칙 제17조에 의거 2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11.1)

②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③(삭제 2011.7.29)

제17조(재학연한) ①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이 학칙 제18조에 의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1.1)

②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재학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삭제 2011. 7. 29)

제19조(삭제 2011. 7. 29)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및 수료

제20조(등록) ① 이 대학원 학생은 이 학칙 제19조에 의거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개정 2011.7.29)
-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개정 2011.7.29)
- 3. (삭제 2011.7.29)
- 4. (삭제 2011.7.29)

제21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이 학칙 제20조에 의거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1. 7. 29)

②(삭제 2011. 7. 29)

③(삭제 2011. 7. 29)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1. 7. 29)

-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개정 2011. 7. 29)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개정 2011. 7. 29)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신설 2011. 7. 2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개정 2011. 7. 29)

제22조(휴학의 조건) ① 휴학은 재학중 입영, 질병, 가사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이를 허용한다.

② 휴학은 병역휴학과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③ 휴학은 이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학적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해외발령, 지방발령, 군입대,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등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제23조(휴학의 기간 및 신청 시기)① 휴학은 1회에 2

학기(1년)을 원칙으로 하며 통산하여 4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병역휴학
2. 해외발령, 지방발령,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③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에는 직전학기 동·하계 방학기간중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학 사유 발생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3선 경과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24조(휴학의 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7. 29)

②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휴학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7. 29)

③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사유가 변경이 있을 때에는 휴학사유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7. 29)

제25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을 하여야 하며 매학기 등록기간에 복학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②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승인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③ 병역휴학자의 전역 일자가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내인 경우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후라도 휴학기간 중의 수업 등으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상 수업이 가능한 경우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6조(복학 시 납입금)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1. 7. 29)

제27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7. 29)

제28조(제적) 이 대학원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이 학칙 제18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2. 이 학칙 제21조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종료하였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이 대학원 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징계된 자
- 제29조(수료) ① 학칙 제25조에 의거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하며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석사학위과정의 수료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
 2. 이수학점은 공통필수 6점, 전공필수 32학점, 논문연구 과목 2학점을 포함하여 40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학위논문을 대체할 경우 4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15. 5. 8)

제 5 장 교과와 학점

제30조(교과과정의 편성) ① 이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이 학칙 제26조에 의거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문연구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1. 1)

②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의 단위학점은 1 - 2학점, 논문연구의 단위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③ 교과과정은 2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주임교수가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제출된 교과과정의 편성을 검토한 후 이 대학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7. 29)

④ (삭제 2011. 7. 29)

⑤ 교과과정은 이 대학원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전공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2. 11. 1)

제31조(교과목의 구성과 이수) ①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4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개정 2015. 5. 8)

② 이수학점은 공통필수 6학점, 전공필수 32학점,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40학점이상을 이수하

여야 한다.(개정 2012.11.1., 개정 2015.5.8)

③ 논문연구는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하고, 학위 과정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여야 하며, 2학점으로 한다.

④ 논문연구과목의 성적평가는 합격(P), 불합격(F)으로 한다.(개정 2011.7.29)

제32조(교과목개설 및 강의) ① 교과목은 학기차 구분없이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과목을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단, 논문연구는 제외한다.

② 주임교수는 다음 학기 개설 과목을 소정의 기간 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학기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소정의 기일 내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강 학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3명 미만인 경우에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4)

제33조(수강신청) ① 다음 학기 수강교과목은 지도교수의 지도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며,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8)

② 학기당 신청학점은 1,2학기 10학점, 3,4학기 12학점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2.11.1., 개정 2015.5.8)

제34조(성적포기) (삭제 2014.10.31.)

제35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과목과 전공이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11.1)

제35조의 2(타 대학원과의 학점인정) 입학 시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동일계 대학원 동일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조신설 2011.7.29)

제 6 장 자격시험

제36조(자격시험) 이 학칙 제32조 제2항에 의거 이 대학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종합

시험으로 한다.

제37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은 3학기 이상, 28학점이상을 이수하고 총성적 평점평균 3.0이상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2.11.1., 개정 2015.5.8)

제38조(실시시기) 종합시험은 매 학기 실시하며 그 시기는 6월과 1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의 1(응시료) 종합시험에 소정의 응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6.2.7)

제39조(응시기한) ① 종합시험의 응시기한은 수료후 2년까지로 한다.(개정 2006.8.8)

② 전항의 기간내에 소정의 합격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자는 학위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8.8)

제40조(종합시험과목) 종합시험에는 번역시험, 순차통역시험 및 동시통역시험이 있으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번역시험 : 한국어(이하 “A”라고 한다)에서 외국어(이하 “B”라고 한다)로 번역하는 시험(이하 “AB번역시험”이라고 한다)과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시험(이하 “BA번역시험”이라고 한다)이 있다.
2. 순차통역시험 : A에서 B로 순차통역하는 시험(이하 “AB순차통역시험”이라고 한다)과 B에서 A로 순차통역하는 시험(이하 “BA순차통역시험”이라고 한다)이 있다.
3. 동시통역시험 : A에서 B로 동시통역하는 시험(이하 “AB동시통역시험”이라고 한다)과 B에서 A로 동시통역하는 시험(이하 “BA동시통역시험”이라고 한다)이 있다.

제41조(학위종류별 시험종류) 이 대학원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개정 2012.11.1)
 - 가. 번역학석사학위 : 번역시험 및 순차통역시험
 - 나. 통역학석사학위 : 순차통역시험 및 동시통역시험
 - 다. 통역번역학석사학위 : 번역시험, 순차통역 시험 및 동시통역시험

2. (삭제 2012.11.1)

제42조(시험위원과 합격여부) ① 종합시험은 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담당한다.

- ② 시험의 각 과목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며 8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6.2.7)
 - ③ 채점은 두 명의 시험위원이 별도로 하여 평균으로 평점을 부여한다.
 - ④ 각 시험내의 모든 과목이 각각 80점을 넘을 때에 합격으로 인정한다.
- 제43조(재시험) 종합시험의 번역시험, 순차통역시험 및 동시통역시험의 과목 중 불합격된 과목은 다음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제 7 장 학위논문

- 제44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이 학칙 제3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5조(논문계획서 제출) ① 논문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는 3학기 초에 연구제목, 목적,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10.31)
- ② 제1항에 의해 제출한 논문계획서상의 논문제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전에 원장에게 논문제목변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31.)
- 제46조(학위논문 심사 청구) 학위논문 심사 청구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심사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7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역할) ① 지도교수는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개정 2012.11.1)
-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의 연구 및 작성을 지도한다.
- ③ 논문 지도교수로 선정되어 논문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한 논문 지도교수에게는 논문심사비를 지급한다.
- 제48조(지도교수의 위촉과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는 제2학기 차에 전공주임교수가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고 전공교수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여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1.1)
- ② 위촉된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

- 한 경우 주임교수가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고, 신·구 지도교수와 전공교수의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논문지도교수의 담당학생 수는 매학기 7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0.12.07)
- 제49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이 학칙 제36조 제4항에 의거 논문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7.29)
- ②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외부인사는 타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위의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2.11.1)
- ③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위원은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2.11.1)
- ④ 심사위원 중 1인은 주심으로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단,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 제50조(논문작성 사용언어) 논문작성은 전공 외국어 또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7.29)
- 제51조(논문작성 체제 및 방법) 논문의 규격, 체제 및 작성 방법 등은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의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2조(논문 심사위원 변경)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기간 중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3조(논문 심사기간)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심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4조(공개발표) 논문은 심사위원 및 관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1회 이상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5조(논문평가 및 심사횟수) ① 논문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연구 방법, 내용의 수준, 체제 및 학문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A, B, C, D로 평가하

되, B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 횟수는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6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등을 기준으로 1회 이상 시행하며,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제57조(구술시험위원) 구술시험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겸임한다.

제58조(논문심사구술시험 판정) ①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심사위원의 3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② 번역학석사 또는 통역학석사 학위를 받을 자격을 구비한 자가 통역번역학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학위수여를 다음 학기로 유보한 경우에는 학위종별신청서(별지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교학지원실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2.7)

③ 전항에 의거 동일한 내용의 논문에 한하여 이미 합격한 논문심사·구술시험의 결과를 인정한다. (신설 2006.2.7)

제59조(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의 결과를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체없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논문제출 시한) 석사학위 논문은 석사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논문제출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1조(논문제출 부수) 합격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서명한 3부를 포함하여 6부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제62조(논문심사자료 제출) 이 대학원 위원회는 논문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한 문헌 또는 부분, 모형, 표본 등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8 장 학위수여

제63조(학위수여 요건) 이 대학원의 학위수여 요건은 이 학칙 제39조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12.11.1)

2. 제31조 제2항의 학점을 모두 이수한자(개정 2007.10.24)

3.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4.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4학기 이상 정규 등록자(개정 2012.11.1)

6. 논문심사 및 구술 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을 제출한 자(개정 2007.10.24)

제63조의 2(학위논문 대체인정)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대체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 외에 전공과목에서 4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그 취득 성적이 각 과목별 3.0이상인 경우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조신설 2012.11.1)

②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은 2학기 초에 논문 또는 학위논문대체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③ 논문을 신청한 자가 학위논문대체이수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2.11.1)

제64조(학위종별) 이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11.1)

1. 통역번역학석사: 한영통역번역학전공, 한일통역번역학전공, 한중통역번역학전공
2. 통역학석사: 한영통역학전공, 한일통역학전공, 한중통역학전공
3. 번역학석사: 한영번역학전공, 한일번역학전공, 한중번역학전공

제64조의 2(학위종별 신청) 제63조의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는 제64조의 학위종별에 따라 학위종별신청서(별지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교학지원실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2.7)

제65조(학위신청 구비서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 심사 신청서
2. 심사용 논문
3. 심사료

제66조(학위수여 사정) 이 대학원 위원회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을 실시하여 학위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제67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의 시기는 2월과 8월에 시행하며, 연 2회로 한다.

제68조(학위복장) 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 색상은 다음과 같다.

① 후드 색상

1. 통역학, 번역학, 통역번역학 - 흰색

② (삭제 2012.11.1)

③ 학위모의 수술 색상은 학위종별 후드 색상으로 한다.

제 9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69조(공개강좌) ① 이 학칙 제45조제2항에 의거 공개강좌의 과명명, 과목 또는 내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② 공개강좌 수강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0조(연구생) ① 이 학칙 제46조제6항에 의거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③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④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이 학칙 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생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제 10 장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제71조(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및 금액) ① 장학금이 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하며, 이 학칙 제47조에 의거 이 대학원에서 지급하 는

장학금의 종류는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학업격려장학금, 법인재직장학금, 교직원 복지장학금, 가족장학금, 모교장학금, 인턴쉽장학 금, 공로장학금, 봉사장학금, 외국인복지장학금, 면학장학금으로 한다. (개정 2011.7.29.)

② 제1항에 의거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

③ 입학성적우수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은 전 공별·학기별 인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 다.

1. 3명 이상 10명 이하: 1명

2. 11명 이상 20명 이하: 2명

3. 21명 이상 30명 이하: 3명

4. 31명 이상: 4명

④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자중 타 장학금의 수혜로 성적장학금을 포기할 경우 차석이 승계한다. (신 설 2006.8.8)

제72조(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장 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06.8.8)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 (신설 2006.8.8)

2.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3.0(B) 미만인 자 (신설 2006.8.8)

3. 정규학기(4학기)를 초과하는 자.(개정 2012.11. 1)

② 장학금은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단, 외부장학 금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6.8.8, 2011.7.29)

제73조(연구보조금) 이 학칙47조에 의거 연구능력이 현저히 뛰어나고 국내외 연구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일정부분의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장 운영위원회

제74조(설치) (삭제 2013. 12. 4)

제75조(구성) (삭제 2013. 12. 4)

제76조(임기) (삭제 2013. 12. 4)

제77조(기능) (삭제 2013. 12. 4)

제78조(준용) (삭제 2012.11.1)

부 칙(2005.10.20. 교무위원회 318차 회의)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등의 폐지)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구 이 대학원 학칙의 하부규정인 학위수여규정, 조 기졸업운영규정, 교과운영 및 논문지도세칙, 입학 전형 시행세칙, 장학금지급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이 대학원의 재 적생에게도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4조(종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일반번역시험(제1그룹) 또는 전문번역시험(제2그 룹)에 합격한 자는 번역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5조(휴학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휴학의 기 간 및 신청시기)제1항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 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9. 14. 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3]의 외국인복지장학금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2.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 12. 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 7. 29부터 시행한 다. 다만, [별표3]의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내 용에 관한 변경사항은 2011. 12.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 11. 1 부터 시행한 다. 단, 제16조 수업연한 변경은 2013학년도 입학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 12. 4 부터 시행한 다.

부 칙(201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4조 성적포기 규정 폐지는 2015 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5. 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5월 8일 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7조는 2015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복학시 등록금(제26조제2항 관련)(개정 2011.7.29)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대체·인정한다.

휴 학 일 시	대체·인정 금액
수업일수 1/4 까지	등록금의 전액
수업일수 1/4경과후부터 수업일수 1/3까지	등록금의 2/3
수업일수 1/3경과후부터 수업일수 1/2까지	등록금의 1/2
수업일수 1/2경과후	등록금 전액납부필

[별표 2]

등록금 반환 기준(제21조제4항 관련) (개정 2011. 7. 29)

1. 당해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3]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제71조제2항관련)

(개정 2006.8.8, 2006.9.26, 2006.10.9, 2007.10.24, 2010.9.14., 2011.7.29., 2013. 12. 4)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은 다음의 규정과 같다.

종류	지급대상	지급내용
입학성적우수장학금	당해 학년도 입학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전공별, 학기별인원 제71조 제3항 명시)	등록금의 3분의 1
성적우수장학금	직전학기성적이 우수한 자	등록금의 3분의 1
학업격려장학금	교직원 및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등록금의 3분의 1
법인재직 장학금	학교법인 교직원	등록금의 2분의 1
교직원복지장학금	이 대학교 교직원	등록금 전액
	이 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록금의 3분의 2
가족장학금	우리 학교 대학원에 가족 2명 이상 재학 시 1인의 학생	등록금의 3분의 1
모교장학금	이 대학교 졸업자	등록금의 3분의 1
인턴쉽장학금	이 대학원 재학생으로 인턴쉽장학생으로 근무하는 자	별도금액
공로장학금	이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원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의 3분의 1
봉사장학금	원우회 회장 및 총무 등 학생회 활동에 봉사하고 있는 자	등록금의 3분의 1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학생	입학금의 2분의 1 및 등록금의 3분의 1
면학장학금	가정 곤란한자로서 주임교수 및 원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의 3분의 1

1. 각종 장학금 지급에서 입학금은 제외
2. 외국인 장학금은 본교출신 외국인의 경우 입학금 전액 및 등록금 1/3 지급

[별지 제1호 서식]

재입학원서

※(정원내·정원외)

진공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	최종이수 학년/학기	학년도 학기
제적년월일	년 월 일	제적당시 취득학점	
제적사유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input type="checkbox"/> 미복학 <input type="checkbox"/> 자퇴 <input type="checkbox"/> 학사제적		
병적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역미필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병역필		
주소 (주민등록지)		e-mail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
첨부서류	성적증명서 1부.		
<p>위 사유로 제적되었던 바 20 학년도 제 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 원 자: (인) 전공주임교수: (인)</p> <p>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별지 제3호 서식]

휴학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			학번		
성명			학기차		
주민등록번호			E - Mail		
주소	(우)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휴학사유	<input type="checkbox"/> 병무 <input type="checkbox"/> 가사사정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휴학기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공주임교수: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유필	재무팀 (등록확인)	중앙도서관	예비군연대(男)	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인)	(인)	(인)	년 월 일	(인)

◆ 병무휴학자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별지 제5호 서식]

휴학사유변경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		학번			
성명		학기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우)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휴학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현역입영(육군·해군·공군) <input type="checkbox"/> 공익근무요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대일		제대예정일			
휴학기간 (미기재)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위와 같이 휴학사유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년 월 일</div> 신청인: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유필	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20년 월 일		(인)		

◆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별지 제6호 서식]

복학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진공		학번			
성명		학기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우)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복학사유	<input type="checkbox"/> 제대(제대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가사회복 <input type="checkbox"/> 건강회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휴학기간 (미기재)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학기간)				
<p>위와 같은 사유로 복학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경유필	등록확인	예비군연대(男)	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인)	(인)	20 년 월 일	(인)	

◆ 제출서류 (병역휴학자):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전역증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별지 제7호 서식]

<h2 style="margin: 0;">자퇴신청서</h2>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		학번			
성명		학기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우)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사유					
등록금 환불 여부(미기재)	<input type="checkbox"/> 환불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환불 미대상자	환불비율	등록금의 분의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은 사유로 자퇴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전공주임교수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경유필	등록금 환불대상확인	중앙도서관	예비군연대(男)	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인)	(인)	(인)	20 년 월 일	(인)

◆ 제출서류 (등록금환불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별지 제8호 서식]

학점포기 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		학번		학기차				
성명		연락처	☎:() -					
		연락처	H/P :					
《성적포기 내용》							비고	
No	포기 과 목	교과목번호	이수년도/학기	구분영역	학점수	취득 성적		
1			/		학점			
2			/		학점			
3			/		학점			
4			/		학점			
5			/		학점			
6			/		학점			
7			/		학점			
8			/		학점			
<p>※ 유의사항 ① 성적포기 신청은 3학기차 부터 수강신청 및 확인기간에 한다 ② 성적순위 및 학사경고 등은 성적포기전에 취득한 성적을 적용한다 ③ 성적포기로 인한 해당학기의 성적순위 및 장학순위등의 변동은 인정하지 않으며 필수과목인 경우 동일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성적포기한 과목은 복원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p> <p>※ 위의 취소과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복원되지 않음을 숙지하고 있으며, 졸업불가(교양/전공 영역별 이수학점)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 제출서류: 성적증명서1부.

[별지 제10호 서식]

논문제목 변경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		학번		성명			
당초 논문제목	국문						
	영문						
변경된 논문제목	국문						
	영문						
<p>위와 같이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지도교수: (인)</p> <p style="text-align: right;">전공주임교수: (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별지 제11호 서식]

논문심사(발표)신청서					
구 분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수료생				
전 공		학 번		성 명	
발표예정일	년 월 일		발 표 장 소		
발 표 요 지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 대 폰		
확인 기재사항					
취득학점	평균평점		종합시험 합격여부 (○,× 표시)		
() 학점	() / 4.5		()		
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발표(심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논문제목 _____ _____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지 도 교 수 : (인)					
전 공 주 임 교 수 :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1. 논문발표시 필요한 자료(논문 부수, 기타 발표시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교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논문 공개발표 및 구술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논문심사료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구분	전공		학번		성명				
	논문제목								
논문 발표	일자		장소		평 가	적 합	부 적 합		
	심사요지								
논문 심사	심사결과	심사위원		논 문 심 사				구 술 시 험	
		주 심		A	B	C	D	가	부
		위 원		A	B	C	D	가	부
		위 원		A	B	C	D	가	부
	판 정 <small>심사위원의 2/3이상 찬성</small>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심사요지									
위와 같이 석사학위청구논문 발표 및 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주 심: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지도교수) </div>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 위원(지도교수) 또는 주심이 보고서를 완성(위원들의 서명)하여 교무지원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h2 style="margin: 0;">지도교수 변경신청서</h2>				담 당	팀 장	부원장	원 장
전 공		학 번		성 명			
<p>논문지도교수 변경사항</p>							
변 경 전	(인)			변경후	(인)		
변 경 일 자							
변 경 사 유							
<p>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전공주임교수: (인)</p> <p style="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별지 제14호 서식]

학위종별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학년도 <input type="checkbox"/> 전기 <input type="checkbox"/> 후기 (학년도 미기입, 전기/후기를 체크)					
전공		학번			
성명		연락처(HP)			
<p style="text-align: center;">통역번역대학원 시행세칙 제64조의 2(학위종별 신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위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중 택일)</p> <p>1. 번역학석사 ()</p> <p>2. 통역학석사 ()</p> <p>3. 통역번역학석사 ()</p> <p>4. 학위종류 신청 유보(다음 학기에 종합시험 응시예정)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신청인: (인)</p> <p style="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별지 제15호 서식]

학위논문대체 이수 () 학위논문대체 변경 ()		신청서		담당	팀 장	부원장	원 장														
전	공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생	년	월	일	이		메일 주소															
전	화	자	택)	휴대폰)																	
<p>1. 학위논문 대체·인정 신청</p> <p>상기 본인은 통역번역대학원 시행세칙 제63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위논문 대체(인정)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학위과정</th> <th style="width: 40%;">학위논문대체(인정) 신청</th> <th style="width: 40%;">수강신청 과목</th> </tr> </thead> <tbody> <tr> <td>석사학위 과정</td> <td>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4학점 이수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제출 </td> <td>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d> </tr> </tbody> </table> <p>2. 학위논문 대체이수 변경 신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40%;">변 경 전</th> <th style="width: 45%;">변 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학위과정</td> <td> <input type="checkbox"/> 학위청구논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이수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제출 </td> <td> <input type="checkbox"/> 학위청구논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이수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제출 </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신 청 인: 인 지도 교수: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변경신청자)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0px;">전산입력</td> <td style="width: 100px;">년 월 일</td> </tr> </table> <p style="font-size: 18px; margin-top: 10px;">통역번역대학원장 귀하</p> </div>								학위과정	학위논문대체(인정) 신청	수강신청 과목	석사학위 과정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4학점 이수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학위과정	<input type="checkbox"/> 학위청구논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이수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학위청구논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이수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제출	전산입력	년 월 일
학위과정	학위논문대체(인정) 신청	수강신청 과목																			
석사학위 과정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4학점 이수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학위과정	<input type="checkbox"/> 학위청구논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이수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학위청구논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이수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제출																			
전산입력	년 월 일																				

V. 통합의학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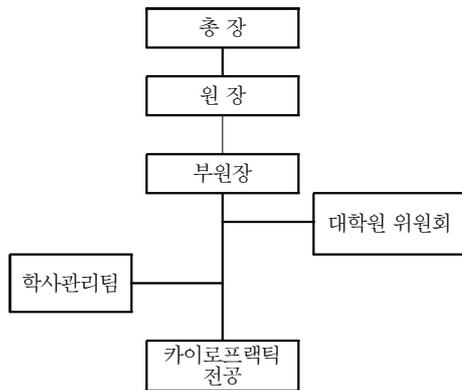
1. 목적

통합의학대학원은 관습적인 의학의 부분으로 간주하지 않는 일군의 다양한 의학 및 건강치료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관습의학과 함께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를 담당할 국제적인 전문 인력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상담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2. 연혁

- 1959. 12. 24 학교법인 성지학원 설립인가
- 1981. 12. 26 부산외국어대학 설립 인가
- 1982. 03. 12 부산외국어대학 개교
- 2015. 11. 03 통합의학대학원 설치인가(카이로프랙틱전공 20명)
- 2016. 03. 01 제1대 통합의학대학원장 박경수 박사 취임

3. 조직 기구표



4. 행정부서

- 업무현황

부서명	담당업무	구내전화
학사관리팀	신입생선발, 강의시간표작성, 교과과정편성, 강의실배정, 강의평가, 강의료, 성적, 휴·복학 학적변동, 장학, 학생관련 업무 등	5146

5. 학생선발

- 전공 및 정원

전공	입학정원
카이로프랙틱전공	20명

6. 통합의학대학원 시행세칙

제정 : 2015.12.3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이 학칙’이라 한다)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이하 ‘이 대학원’이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이 대학원의 학사업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 3 조(입학지원자격) 이 학칙 제10조에 따라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4 조(입학지원서류) 이 학칙 제11조에 따라 이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의 전형료와 함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이 대학원 소정 양식) 1부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성적증명서 1부
4. 재직증명서(공무원 및 기업체근무자에 한함)
5.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6.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 5 조(입학전형) ① 이 학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대학원 입학시험은 매년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항목별 전형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대학성적
2. 면접평가: 전공학문에 대한 이해 및 학습능력에 대한 평가.

③ 제2항의 항목별 평가 및 배점기준과 특별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 6 조(면접위원 위촉) 통합의학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각 전공의 강의담당 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면접평가 위원을 위촉한다.

제 7 조(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구성) 원장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8 조(합격기준) 합격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9 조(합격결정) 원장은 입학정원과 지원자의 전형 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

제10조(편입학지원자격) 이 학칙 제15조에 따라 이 대학원 편입학지원 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일정기간 수학한 자 또는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제11조(편입학지원서류) 이 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함께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1. 편입학 원서(소정양식) 1부
2. 전적대학원 수료(재학)증명서 1부
3.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4.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5.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편입학전형) 이 대학원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형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재입학) ① 이 학칙 제16조에 의하여 제적 또는 자퇴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하며 매 학기말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해야 하고, 정원여석 초과 시 총 성적 평점 평균순에 의하여 선발한다.

③ 재입학은 제적 후 6개월(1학기)이상 경과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④ 재입학은 원적 전공에 한하여 허가하며, 기 취득학점은 수료(이수)학점에 통산한다. 단, 원적 전공이 폐과된 경우 학생의 기 이수과목을 참작하여 원장이 정한다.

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4조(학력조회) 입학허가가 난 후 소정의 등록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적 대학교(원)의 학력을 입학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회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5조(수업연한) ①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이 학칙 제17조에 따라 3년(6학기)로 한다.

②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1. 제29조 제2항에 의거 학기당 기준 학점 초과 취득자
2. 매학기 성적 평균평점 4.3 이상인 자
3. 재학기간 중 본인의 연구실적이 공인된 학회지에 단독으로 게재되거나, 연구실적의 탁월성이

인정되는 자

제16조(조기졸업 지원 자격 및 절차) ① 조기졸업 지원 자격은 4회의 정규등록과 4학기 차까지 전공 64 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제15조 제3항의 각 호를 충족한 자 이어야 한다.

② 제15조 2의 제1항의 자격을 갖춘자는 4학기차 말에 조기졸업 이수신청서(별지 13호 서식)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학연한) ①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이 학칙 제18조에 따라 6년(12학기)으로 한다.

②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재학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및 수료

제18조(등록) ① 이 대학원 학생은 이 학칙 제19조에 따라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1학점부터 7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8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19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 학칙 제20조에 따라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반환 사유”라 한다)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20조(휴학의 조건) ① 휴학은 재학 중 입영, 질병, 가사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② 휴학은 병역휴학과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③ 휴학은 이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해외발령, 지방발령, 군입대,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등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제21조(휴학의 기간 및 신청 시기) ① 이 학칙 제21조에 따라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로 하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병역휴학
2. 해외발령, 타지발령,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 ③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에는 당해학기 개강일 이전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학사유 발생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경과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22조(휴학의 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신청서’(별지 2호 서식)에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사유서, 병역징집 영장,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휴학연장신청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사유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휴학사유변경신청서’(별지 4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을 하여야 하며 매학기 등록기간에 ‘복학신청서’(별지 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승인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③ 병역휴학자의 전역 일자가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내인 경우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

다. 단,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후라도 휴가기간 중의 수업 등으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상 수업이 가능한 경우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4조(복학시 등록금) ①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②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군입대를 제외한 사유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대체하여 인정한다.

제25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서’(별지 6호 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제적) 이 대학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학칙 제17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2. 학칙 제21조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징계된 자.

제27조(수료) ① 이 학칙 제25조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수료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전공에서 84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교과와 학점

제28조(교과과정의 편성) ① 이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이 학칙 제26조에 따라 전공, 논문대체과목 및 논문연구로 구분한다.

② 각 과목의 단위 학점은 2학점, 논문연구는 2학점으로 한다.

③ 교과과정은 2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원장은 교과과정의 편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과과정은 이 대학원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전공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⑤ 교과과정은 학부의 교과과정과 적절한 연계성을 갖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29조(교과과정의 이수) ①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전공(84학점)으로 한다.

② 논문연구는 학위과정 마지막 학기에 논문지도 교수가 담당하고, 2학점으로 한다. 단, 논문연구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논문대체과목은 최저이수학점(84학점) 취득 후 5~6학기차에 걸쳐 2과목(4학점)을 이수하고 그 취득학점이 B학점(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논문대체과목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논문연구과목의 평가는 합격(P), 불합격(F)으로 한다.

제30조(교과목개설 및 강의) ① 교과목은 학기차 구분없이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과목을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단, 논문연구는 제외한다.

② 다음 학기 개설 과목은 소정의 기한 내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학기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소정의 기일 내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강 학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3명 미만인 경우에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제31조(수강신청) ① 다음 학기 수강은 소정의 기간 내에 우리 대학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기당 신청학점은 1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3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과목과 전공이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 및 카이로프랙티브 의사면허소지자는 조교수도 교과목 담당교수가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타 대학원과의 학점인정) ① 이 대학원에 입학하고자하는 자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이 대학원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14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신청서(별지 8호 서식)

2. 해당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14학점 이상 인정을 받았을 경우, 1학기를 등록 단축할 수 있다.

④ 원장이 인정하는 타 대학원과의 협정에 의하여 학점교환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대학원 학생이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16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1학기에 8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⑤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단위학점이 이 대학원과 상이한 경우 이 대학원의 단위학점에 준하여 인정한다.

제 6 장 자격시험

제34조(자격시험의 구분) 이 학칙 제32조에 따라 이 대학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35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은 5학기이상 등록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으로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제36조(실시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실시하며 그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은 전공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공과목 중 주임교수의 신청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38조(시험위원과 평점) 종합시험은 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담당하며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39조(재시험)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에 응시할 수 있다.

제 7 장 학위논문

제40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이 학칙 제3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논문연구계획서는 5학기 초에 연구제목, 목적,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출한 논문연구계획서상의 논문제목이 변경될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논문제목변경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③ 논문연구계획서와 함께 학위논문윤리준수서약서(별지 1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42조(학위논문 심사 청구) ① 학위논문 심사 청구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학위청구논문심사(발표)신청서’(별지 10호 서식)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역할) ① 지도교수는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의 연구 및 작성을 지도한다.

③ 논문 지도교수로 선정되어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논문 지도교수에게는 논문심사비를 지급한다.

제44조(지도교수의 위촉과 변경) ① 논문 지도교수는 제4학기 차에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된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변경신청서’(별지 11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의 담당학생 수는 매학기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이 학칙 제36조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외부인사는 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위의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전임강사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이 박사학위 미소지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 중 1인은 주심으로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단,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 제46조(논문작성 사용언어)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으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7조(논문작성 체제 및 방법) 논문의 규격, 체제 및 작성 방법 등은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의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8조(논문 심사위원 변경)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기간 중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9조(논문심사 기간)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개시 후 6개월 이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0조(공개발표) 논문은 심사위원 및 관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1회 이상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1조(논문평가 및 심사횟수) ① 논문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연구방법, 내용의 수준, 체제 및 학문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A, B, C, D로 평가하되, B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 횟수는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2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등을 기준으로 1회 이상 시행하며,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 제53조(구술시험위원) 구술시험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겸임한다.
- 제54조(논문심사·구술시험 판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 제55조(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의 결과를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체 없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6조(논문제출 시한) 학위논문은 석사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논문제출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7조(논문제출 부수) 합격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서명한 3부를 포함하여 소정의 부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논문심사자료 제출) 이 대학원 위원회는 논문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한 문헌 또는 부분, 모형, 표본 등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8 장 학위수여

제59조(학위수여 요건) ① 이 대학원의 학위수여 요건은 이 학칙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총 8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6학기 이상 정규 등록자
5. 석사학위청구 논문이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학위논문대체에 관한 사항에 합당한 요건을 충족한 자

제60조(학위논문대체·인정)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대체·인정 받고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 1을 충족할 경우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 외에 논문대체과목 2과목(4학점)을 이수하고, 그 취득 평점이 과목별 3.0이상 인 경우
- ② 제1항 제1호에 의해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5학기 초에 논문대체과목 이수신청서(별지 14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학위종별) 이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통합의학석사: 카이로프랙틱전공

제62조(학위수여 사정) 위원회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을 실시하여 학위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의 시기는 2월과 8월에 시행하며, 연 2회로 한다.

제64조(학위복장) 석사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 색상은 다음과 같다.

- ① 후드 색상 녹색
- ② 후드 내부의 바탕 색상은 교색으로 한다.
- ③ 학위모의 수술 색상은 학위종별 후드 색상으로 한다.

제 9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65조(공개강좌) ① 이 학칙 제45조에 따라 공개강좌의 과정명, 과목 또는 내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② 공개강좌 수강을 원하는 자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6조(연구생) ① 이 학칙 제46조에 따라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③ 학기당 이수학점은 14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④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한다.

제 10 장 장학금 및 상벌

제67조(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 ① 이 학칙 제47조에 따라 이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우수장학금, 교직원복지장학금, 모교장학금, 가족장학금, 외국인장학금, 인턴십장학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 다 장학금의 수혜로 성적장학금을 포기할 경우 차석이 승계한다. 단, 인턴십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68조(지급제한) ①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
- 2. 휴학한 자
- 3. 정규학기(6학기)를 초과하는 자
- ② 장학금은 중복 지급을 하지 않으며,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유리한 쪽 하나만 지급한다.

제69조(연구보조금) 연구능력이 현저히 뛰어나고 국내·외 연구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일정부분의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록금 반환 기준(제18조 제3항과 관련)(개정 2011.7.29)

1. 당해 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반환한다.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2]

복학시 등록금(제23조 제2항 관련)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대체·인정한다.

휴학 일시	대체·인정 금액
수업일수 1/4 이전	등록금의 전액
수업일수 1/4경과 후부터 수업일수 1/3경과 전	등록금의 2/3
수업일수 1/3경과 후부터 수업일수 1/2경과 전	등록금의 1/2
수업일수 1/2경과 후	등록금 전액

[별표 3]

장학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내용(제67조 제2항 관련)

(개정 2011.7.29)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은 다음의 규정과 같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성적우수 장학금	재학생수(신입생 제외)의 5% 범위 내에서 직전학기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	등록금의 1/3
교직원복지 장학금	이 대학교 교직원	등록금 1/2
모교장학금	이 대학교 졸업자	등록금 1/3
가족장학금	이 대학원에 가족 2명 이상 재학시 1인	등록금 1/3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학생	등록금의 1/3
인턴십장학금	재학생으로서 인턴십 근무자	별도금액

1. 각종 장학금 지급에서 입학금은 제외.(이 대학교 교직원은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재 입 학 원 서

전 공 (학 과)		성 명	
학 번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전 화	자 택) 휴대폰)		
주 소	(우) -		
제 적 일 자		제 적 사유	
<p>위 사유로 제적되었던 바 20 학년도 제 학기에 재입학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①</p> <p style="text-align: right;">전공주임교수 : ①</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 1부

통합의학대학원

[별지 제2호 서식]

휴학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총장
전공(학과)		학번				
성명		학기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우)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휴학사유	<input type="checkbox"/> 병무 <input type="checkbox"/> 가사사정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휴학기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20 . . . ~ 20 . . .)					
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① 전공주임교수: ①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유필	재무팀 (등록확인)	중앙도서관	예비군연대 (男)	대학원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①	①	①	년 월 일	①	

※ 병무휴학자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

통합의학대학원

[별지 제3호 서식]

휴학연장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학과)		학번			
성명		학기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우)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연장전사유		연장전기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연장사유	<input type="checkbox"/> 가사사정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장기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공주임교수: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유필	재무팀(등록확인)	대학원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인	년 월 일		인	

[별지 제4호 서식]

휴학사유변경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학과)		학번			
성명		학기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우)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휴학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현역입영(육군·해군·공군) <input type="checkbox"/> 공익근무요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대일		제대예정일			
휴학기간 (미기재)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위와 같이 휴학사유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20년 월 일 신청인: 인 </div>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유필	대학원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20년 월 일		인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

통합의학대학원

[별지 제5호 서식]

복학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학과)		학번			
성명		학기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우)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복학사유	<input type="checkbox"/> 제대(제대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가사회복 <input type="checkbox"/> 건강회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휴학기간 (미기재)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학기간)				
위와 같은 사유로 복학하고자 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20 년 월 일 신청인: ㉠ </div>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유필	등록확인	예비군연대(男) (후생관 4층)	대학원 접수 일자	전산입력확인	
	㉠	㉠	20 년 월 일	㉠	

※ 제출서류 (병역휴학자) :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전역증 사본 1부

통합의학대학원

[별지 제6호 서식]

자퇴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학과)		학번				
성명		학기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우)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사유						
등록금환불 여부(미기재)	<input type="checkbox"/> 환불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환불 미대상자	환불비율	등록금의__분의__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은 사유로 자퇴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전공주임교수: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경유필	등록금 환불대상 확인	중앙도서관	학생증반납	예비군연대(男)	대학원 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인)	(인)	(인)	(인)	20 년 월 일	(인)

※ 제출서류 (등록금환불대상자) : 은행계좌 사본 1부

통합의학대학원

[별지 제7호 서식]

성적포기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 (학과)		학번			학기차		
성명		연락처	☎ () C/P				
성적 포기 내용							
연번	포기과목	교과목번호	이수년도/학기	구분영역	학점수	취득성적	비고
1							
2							
3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적포기는 3학기차 부터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확인기간에 한하여 포기신청을 하여야 함. 2. 성적 포기로 인한 해당학기의 성적순위 및 장학순위 등의 변동은 인정하지 않음. 3. 성적 포기한 과목은 복원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p>※ 위의 취소과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복원되지 않음을 숙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p>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대학원 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201 년 월 일				(인)			

[별지 제8호 서식]

타대학원학점인정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인정학기		201 학년도 제 학기								
전공(학과)				학기차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교류협정 <input type="checkbox"/> 유학 <input type="checkbox"/> 연수					전화번호				
수학기간	~ (학기)					대학명				
						국가명				
타 대학원 이수사항										
타 대학원 이수과목					이 대학원 학점 및 성적인정 교과목					비고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인정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학점계					학점계					
<p>TESOL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에 의거 타대학원학점이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전공주임교수: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 청 인: Ⓜ</p> <p style="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해당 대학원) 1부
2. 전공교수 회의록 1부(타 대학원 이수과목과 이 대학원 교과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통합의학대학원

[별지 제9호 서식]

논문연구계획서

전공(학과)		성 명		학 번		학기차	
논문제목							
<p>○ 연구 목적</p> <p>○ 연구방법 및 개요</p>							
연구 일정(~)	연구 내용	참 고 문 헌					
~ ~ ~							

위와 같이 석사학위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 출 자: (인)

논문연구 계 획 서 심사결과 내 용	
------------------------------	--

위와 같이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논문지도교수: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논문제목변경신청서		담 당	팀 장	부원장	원 장
전 공 (학 과)		학 번			
성 명		전화번호			
당초 논문제목					
변경된 논문제목					
<p>위와 같이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 청 인: ①</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지 도 교 수: ①</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전공주임교수: ①</p> <p style="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장 귀하</p>					

[별지 제11호 서식]

학위청구논문 심사(발표)신청서			
과 정		구 분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수료생
전공(학과)		학 번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우) -	발표장소	
발표예정일	년 월 일		
논 문 제 목			
<p>※ 확인기재사항</p> <p>1. 취득학점 : 전공과목 학 점 (평균평점 - /4.5) 선수과목 학 점 (평균평점 - /4.5)</p> <p>2. 자격시험 : 종합시험 ()</p> <p>3. 신청구분 : 금번학기 신청자() / 이전학기 보류자() 보류학년도: 년도 학기</p> <p style="margin-top: 20px;">위와 같이 학위청구논문을 심사(발표)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논문지도교수: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전공주임교수: (인)</p> <p style="margin-top: 20px; text-align: center;">부산외국어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장 귀하</p>			

[별지 제12호 서식]

논문지도교수변경신청서				담당	팀장	부원장	원장
전공 (학과)		학번		성명			
논문지도교수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자							
변경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인: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변경 전 지도교수: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변경 후 지도교수: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장 귀하</p>							

VI 산업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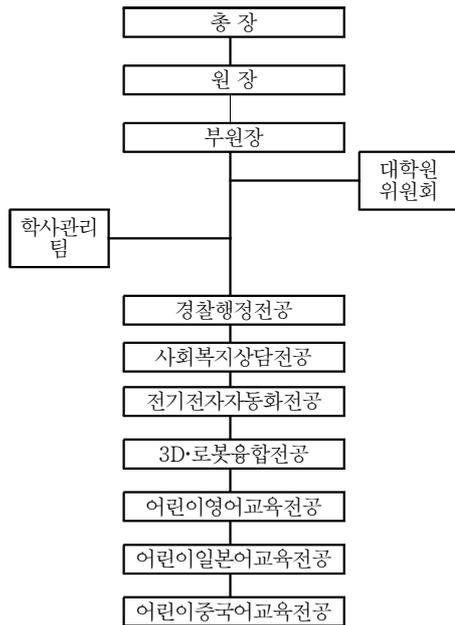
1. 목적

산업대학원은 산업기술 및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과학적 방법으로 교수하고, 연구하여 산업 및 교육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 1959. 12. 24 학교법인 성지학원 설립인가
- 1981. 12. 26 부산외국어대학 설립 인가
- 1982. 03. 12 부산외국어대학 개교
- 2015. 11. 03 산업대학원 설치인가(정원40명)
- 2016. 03. 01 제1대 산업대학원장 박경수 박사 취임

3. 조직 기구표



4. 행정부서

□ 업무현황

부서명	담당업무	구내전화
학사관리팀	신입생선발, 강의시간표작성, 교과과정편성, 강의실배정, 강의평가, 강의료, 성적, 휴·복학 학적변동, 장학, 학생관련 업무 등	5146

5. 학생선발

□ 전공 및 정원

전공	입학정원
통합	40명

6. 산업대학원 시행세칙

제정 : 2015. 12. 3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이 학칙’이라 한다)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산업대학원(이하 ‘이 대학원’이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 이 대학원의 학사업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 3 조(입학지원자격) 이 학칙 제10조에 따라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 4 조(입학지원서류) 이 학칙 제11조에 따라 이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의 전형료와 함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이 대학원 소정 양식) 1부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성적증명서 1부
 4. 제직증명서(공무원 및 기업체근무자에 한함)
 5.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6.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 5 조(입학전형) ① 이 학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대학원 입학시험은 매년 2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항목별 전형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대학성적
 2. 면접평가: 전공학문에 대한 이해 및 학습능력에 대한 평가
 - ③ 제2항의 항목별 평가 및 배점기준과 특별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 제 6 조(면접위원 위촉) 산업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각 전공의 강의담당 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면접평가위원을 위촉한다.
- 제 7 조(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구성) 원장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 8 조(합격기준) 합격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9 조(합격결정) 원장은 입학정원과 지원자의 전형 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
- 제10조(편입학지원자격) 이 학칙 제15조에 따라 이 대학원 편입학지원 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일정기간 수학한 자 또는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

- 다.
- 제11조(편입학지원서류) 이 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함께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1. 편입학 원서(소정양식) 1부
 2. 전적대학원 수료(재학)증명서 1부
 3.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4.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5.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12조(편입학전형) 이 대학원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형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3조(재입학) ① 이 학칙 제16조에 의하여 제적 또는 자퇴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하며 매 학기말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해야 하고, 정원여석 초과 시 총 성적 평점 평균순에 의하여 선발한다.
- ③ 재입학은 제적 후 6개월(1학기)이상 경과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 ④ 재입학은 원적 전공에 한하여 허가하며, 기 취득학점은 수료(이수)학점에 통산한다. 단, 원적 전공이 폐과된 경우 학생의 기 이수과목을 참작하여 원장이 정한다.
- 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제14조(학력조회) 입학허가가 난 후 소정의 등록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적 대학교(원)의 학력을 입학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회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제15조(수업연한) ①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이 학칙 제17조에 따라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 ②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1. 제29조 제2항에 의거 학기당 기준 학점 초과 취득자
2. 매학기 성적 평균평점 4.3 이상인 자
3. 재학기간 중 본인의 연구실적이 공인된 학회지에 단독으로 게재되거나, 연구실적의 탁월성이 인정되는 자

제16조(조기졸업 지원 자격 및 절차) ① 조기졸업 지원 자격은 3회의 정규등록과 3학기 차까지 전공 18 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제15조 제3항의 각 호를 충족한 자 이어야 한다.

② 제15조 2의 제1항의 자격을 갖춘자는 3학기차 말에 조기졸업 이수신청서(별지 13호 서식)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학연한) ①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이 학칙 제18조에 따라 4년(8학기)으로 한다.

②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재학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및 수료

제18조(등록) ① 이 대학원 학생은 이 학칙 제19조에 따라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19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 학칙 제20조에 따라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반환 사유”라 한다)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20조(휴학의 조건) ① 휴학은 재학 중 입영, 질병, 가사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② 휴학은 병역휴학과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③ 휴학은 이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해외발령, 지방발령, 군입대,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등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제21조(휴학의 기간 및 신청 시기) ① 이 학칙 제21조에 따라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로 하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병역휴학
2. 해외발령, 타지발령,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 ③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에는 당해학기 개강일 이전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학사유 발생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경과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22조(휴학의 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신청서’(별지 2호 서식)에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사유서, 병역징집 영장,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휴학연장신청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사유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휴학사유변경신청서’(별지 4호 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을 하여야 하며 매학기 등록기간에 ‘복학신청

서'(별지 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승인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③ 병역휴학자의 전역 일자가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내인 경우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후라도 휴학기간 중의 수업 등으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상 수업이 가능한 경우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4조(복학시 등록금) ①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②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군입대를 제외한 사유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대체하여 인정한다.

제25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서'(별지 6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제적) 이 대학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학칙 제17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2. 학칙 제21조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징계된 자.

제27조(수료) ① 이 학칙 제25조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수료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교과와 학점

제28조(교과과정의 편성) ① 이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이 학칙 제26조에 따라 전공, 논문대체과목 및 논문연구로 구분한다.

② 각 과목의 단위 학점은 3학점, 논문연구는 2학

점으로 한다.

③ 교과과정은 2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원장은 교과과정의 편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과과정은 이 대학원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전공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⑤ 교과과정은 학부의 교과과정과 적절한 연계성을 갖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29조(교과과정의 이수) ①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전공과목 24학점 이상과 논문연구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위논문 대체로 졸업할 경우 전공과목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논문연구는 학위과정 마지막 학기에 논문지도 교수가 담당하고, 2학점으로 한다. 단, 논문연구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논문대체과목은 최저이수학점(24학점) 취득 후 4~5학기차에 걸쳐 2과목(6학점)을 이수하고 그 취득학점이 B학점(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논문대체과목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논문연구과목의 평가는 합격(P), 불합격(F)으로 한다.

제30조(교과목개설 및 강의) ① 교과목은 학기차 구분 없이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원장은 동일과목을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다음 학기 개설 과목은 소정의 기한 내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학기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소정의 기일 내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강 학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3명 미만인 경우에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제31조(수강신청) ① 다음 학기 수강은 소정의 기간 내에 우리 대학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기당 신청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3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과목과 전공이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교과목 담당교수가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타 대학원과의 학점인정) ① 이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중 국내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이 대학원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신청서(별지 8호 서식)
2. 해당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6학점 이상 인정을 받았을 경우, 한 학기를 등록 단축할 수 있다.

④ 원장이 인정하는 타 대학원과의 협정에 의하여 학점교환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대학원 학생이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1학기에 3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⑤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단위학점이 이 대학원과 상이한 경우 이 대학원의 단위학점에 준하여 인정한다.

제 6 장 자격시험

제34조(자격시험의 구분) 이 학칙 제32조에 따라 이 대학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35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으로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제36조(실시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실시하며 그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은 전공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공과목 중 주임교수의 신청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38조(시험위원과 평점) 종합시험은 원장이 위촉하

는 시험위원이 담당하며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39조(재시험)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에 응시할 수 있다.

제 7 장 학위논문

제40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이 학칙 제3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논문연구계획서는 4학기 초에 연구제목, 목적,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출한 논문연구계획서상의 논문 제목이 변경될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논문제목변경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③ 논문연구계획서와 함께 학위논문윤리준수서약서(별지 1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42조(학위논문 심사 청구) ① 학위논문 심사 청구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학위청구논문심사(발표)신청서’(별지 10호 서식)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역할) ① 지도교수는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의 연구 및 작성을 지도한다.

③ 논문 지도교수로 선정되어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논문 지도교수에게는 논문심사비를 지급한다.

제44조(지도교수의 위촉과 변경) ① 논문 지도교수는 3학기 차에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된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변경신청서’(별지 11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의 담당학생 수는 매학기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이 학칙 제 36조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외부인사는 타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위의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이 박사학위 미소지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 중 1인은 주심으로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단,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제46조(논문작성 사용언어)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으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논문작성 체제 및 방법) 논문의 규격, 체제 및 작성 방법 등은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의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논문 심사위원 변경)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기간 중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논문심사 기간)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개시 후 6개월 이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공개발표) 논문은 심사위원 및 관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1회 이상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논문평가 및 심사횟수) ① 논문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연구방법, 내용의 수준, 체제 및 학문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A, B, C, D로 평가하되, B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 횟수는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등을 기준으로 1회 이상 시행하며,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제53조(구술시험위원) 구술시험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겸임한다.

제54조(논문심사·구술시험 판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제55조(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의 결과를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체없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논문제출 시한) 학위논문은 석사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논문제출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7조(논문제출 부수) 합격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서명한 3부를 포함하여 소정의 부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논문심사자료 제출) 이 대학원 위원회는 논문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한 문헌 또는 부분, 모형, 표본 등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8 장 학위수여

제59조(학위수여 요건) ① 이 대학원의 학위수여 요건은 이 학칙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총 2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5학기 이상 정규 등록자
5. 석사학위청구 논문이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학위논문대체에 관한 사항에 합당한 요건을 충족한 자

제60조(학위논문대체·인정)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대체·인정 받고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 1을 충족할 경우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 외에 논문대체과목 2과목(6학점)을 이수하고, 그 취득 평점이 과목별 3.0이상인 경우
- ② 제1항 제1호에 의해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초에 논문대체과목 이수신청서(별지 14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학위종별) 이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찰학석사: 경찰행정전공
 상담학석사: 사회복지상담전공
 공학석사: 전기전자자동화전공, 3D·로봇융합전공
 교육학석사: 어린이영어교육전공, 어린이일본어교육전공, 어린이중국어교육전공

제62조(학위수여 사정) 위원회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을 실시하여 학위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의 시기는 2월과 8월에 시행하며, 연 2회로 한다.

제64조(학위복장) 석사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 색상은 다음과 같다.

- ① 후드 색상
 - 가. 경찰학석사: 파란색
 - 나. 상담학석사: 담황색
 - 다. 공학석사: 주황색
 - 라. 교육학석사: 하늘색
- ② 후드 내부의 바탕 색상은 교색으로 한다.
- ③ 학위모의 수술 색상은 학위종별 후드 색상으로 한다.

제 9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65조(공개강좌) ① 이 학칙 제45조에 따라 공개강좌의 과정명, 과목 또는 내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 ② 공개강좌 수강을 원하는 자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6조(연구생) ① 이 학칙 제46조에 따라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으로 한다.
- ③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 ④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⑤ 연구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한다.

제 10 장 장학금 및 상벌

제67조(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 ① 이 학칙 제47조에 따라 이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우수장학금, 학업격려장학금, 공직자우대장학금, 교직원복지장학금, 모교장학금, 협정기관장학금, 공로장학금, 외국인장학금, 가족장학금, 면학장학금, 인턴십장학금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 ③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 다 장학금의 수혜로 성적장학금을 포기할 경우 차석이 승계한다. 단, 인턴십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68조(지급제한) ①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
- 2. 휴학한 자
- 3. 정규학기(5학기)를 초과하는 자
- ② 장학금은 중복 지급을 하지 않으며,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유리한 쪽 하나만 지급한다.

제69조(연구보조금) 연구능력이 현저히 뛰어나고 국내·외 연구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일정부분의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록금 반환 기준(제19조 제2항 관련)

1. 당해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2]

복학시 등록금(제24조 제2항 관련)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대체·인정한다.

휴 학 일 시	대체·인정 금액
수업일수 1/4 이전	등록금의 전액
수업일수 1/4경과 후부터 수업일수 1/3경과 전	등록금의 2/3
수업일수 1/3경과 후부터 수업일수 1/2경과 전	등록금의 1/2
수업일수 1/2경과 후	등록금 전액 납부필

[별표 3]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내용(제67조)

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비고
성적우수 장학금	직전학기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 (재학생의 10% 범위 내)	등록금의 1/3	
학업격려 장학금	교직원, 공무원, 산업체근무자로 재직 중인 자	등록금의 1/3	
공직자우대 장학금	경위 또는 사무관 이상의 직급에 준하는 공직자로 재직 중인 자	등록금의 1/2	
교직원복지 장학금	이 대학교 교직원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이 대학교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록금의 2/3	
모교장학금	이 대학교 졸업자	입학금 및 등록금의 1/3	
협정기관 장학금	우리대학과 협정이 체결된 기관에 재직 중인 자	등록금의 1/2	
공로장학금	이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원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의 1/3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학생	입학금 1/2 및 등록금의 1/3	
가족장학금	이 대학원에 가족 2명 이상 재학 시 1인의 학생	등록금의 1/3	
면학장학금	가계곤란자로서 원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의 1/3	
인턴십장학금	재학생으로서 인턴십 근무자	별도금액	

1. 각종 장학금 지급에서 입학금은 제외 함.
2. 외국인장학금은 본교 출신 외국인의 경우 입학금 전액 및 등록금의 1/2 지급

[별지 제2호 서식]

휴학신청서				담당	팀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 - Mail				
주 소	(우) -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폰			
휴 학 사 유	<input type="checkbox"/> 병무 <input type="checkbox"/> 가사사정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휴 학 기 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p>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하고자 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신 청 인: 인</p> <p style="margin-top: 20px; font-size: 1.2em;">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경 유 필	재무팀 (등록확인)	중앙도서관	예비군연대(男)	대학원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인	인	인	년 월 일	인	

◆ 병무휴학자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산업대학원

678 대학원

[별지 제3호 서식]

휴학연장신청서				담당	팀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 - Mail				
주 소	(우) -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폰			
연 장 전 사 유		연 장 전 기 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연 장 사 유	<input type="checkbox"/> 가사사정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 장 기 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신 청 인: ①</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font-size: 1.2em;">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경 유 필	재무팀(등록확인)	대학원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①	년 월 일			①	

[별지 제4호 서식]

휴학사유변경신청서			담당	팀장	원장
학 과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휴학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현역입영(육군·해군·공군) <input type="checkbox"/> 공익근무요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 대 일		제대예정일			
휴 학 기 간 (미 기 재)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p>위와 같이 휴학사유를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p> <p>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경 유 필	대학원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20 년 월 일		㉠		

◆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

부산외국어대학교 산업대학원

[별표 제6호 서식]

자퇴신청서				담당	팀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 - Mail				
주 소	(우) -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폰			
사 유						
등록금 환 불 여부(미기재)	<input type="checkbox"/> 환 불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환 불 미대상자	환 불 비 율	등록금의 분의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은 사유로 자퇴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신 청 인 : ①</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font-weight: bold;">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경 유 필	등록금 환 불 대상 확인	중앙도서관	학생증반납	예비군연대 (男) (후생관 4층)	대학원 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①	①	①	①	20 년 월 일	①

◆ 제출서류 (등록금환불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산업대학원

[별지 제8호 서식]

타대학원학점인정신청서 (신입생용)						담당	팀장	원장		
인 정 학 기		20 학년도 제 학기								
전 공		학 기 차		학 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학위취득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중퇴				전 화 번 호					
수 학 기 간	~ (학기간)				대 학 명					
					국 가 명					
타 대학원 이수사항										
타 대학원 이수과목					이 대학원 학점 및 성적인정 교과목					비고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인정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학점계					학점계					
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에 따라 타대학원 학점 이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인: ㉠</div>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해당 대학원) 1부
2. 해당학과 교수회의록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산업대학원

[별지 제8호의 서식]

타대학원학점인정신청서 (재학생용)					담당	팀장	원장			
인 정 학 기	20 학년도 제 학기									
전 공				학 기 차			학 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교류협정 <input type="checkbox"/> 유학 <input type="checkbox"/> 연수				전 화 번 호					
수 학 기 간	~ (학기간)				대 학 명					
					국 가 명					
타 대학원 이수사항										
타 대학원 이수과목					이 대학원 학점 및 성적인정 교과목					비고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인정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학점계					학점계					
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에 의거 타대학원 학점 이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 20px 0;">신 청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font-size: 1.2em;">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div>										

※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해당 대학원) 1부
2. 해당학과 교수회의록 1부(타대학원 이수과목과 이 대학원 교과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부산외국어대학교 산업대학원

[별지 제9호 서식]

논문제목변경신청서		담당	팀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전 화 번 호		
당 초 논문 제목				
변경된 논문 제목				
<p>위와 같이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p> <p style="text-align: right;">지 도 교 수: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p>				

[별지 제10호 서식]

학위청구논문 심사(발표)신청서			
과 정		구 분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수료생
전 공		학 번	
성 명		전 공	
주 소	(우) -	전 화 번 호	
발표예정일	년 월 일	발 표 장 소	
논 문 제 목			
<p>※ 확인기재사항</p> <p>1. 취득학점: 전공과목 학점 (평균평점 - /4.5) 선수과목 학점 (평균평점 - /4.5)</p> <p>2. 자격시험: 종합시험()</p> <p>3. 신청구분: 금번학기 신청자() / 이전학기 보유자() 보유학년도 - 년도 학기</p> <p>위와 같이 학위청구논문을 심사(발표)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①</p> <p style="text-align: right;">지 도 교 수: ①</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p>			

[별지 제11호 서식]

지도교수변경신청서				담당	팀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지도교수변경사항						
변 경 전	①	변 경 후	②			
변 경 일 자						
변 경 사 유						
<p>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①</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p>						

[별지 제12호 서식]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전 공		학 번		성명	
지도교수	소 속 전 공				성명	
논문 제목	국 문					
	영 문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에 있어 논문대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서명)

확인자: (서명)
(지도교수)

산업대학원장 귀하

VII 글로벌골프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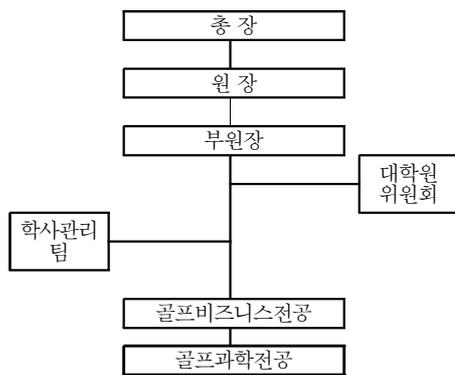
1. 목적

글로벌골프대학원은 골프와 관련된 비즈니스 전반적인 분야를 분석하며, 골프스 윈윈리, 골프스 윈분석, 골프 기능성 트레이닝 및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실기 기술을 배워 골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을 가지며, 골프산업 및 골프 트레이닝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혁

- 1959. 12. 24 학교법인 성지학원 설립인가
- 1981. 12. 26 부산외국어대학 설립 인가
- 1982. 03. 12 부산외국어대학 개교
- 2015. 11. 03 글로벌골프대학원 설치인가
(정원20명)
- 2016. 03. 01 제1대 글로벌골프대학원장 박경수
박사 취임

3. 조직 기구표



4. 행정부서

- 업무현황

부서명	담당업무	구내전화
학사관리팀	신입생선발, 강의시간표작성, 교과과정편성, 강의실배정, 강의평가, 강의료, 성적, 휴·복학 학적변동, 장학, 학생관련 업무 등	5146

5. 학생선발

- 전공 및 정원

전공	입학정원
통합	20명

6. 산업대학원 시행세칙

제정 : 2015. 12. 3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이 학칙’이라 한다)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골프대학원(이하 ‘이 대학원’이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이 대학원의 학사업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3조(입학지원자격) 이 학칙 제10조에 따라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4 조(입학지원서류) 이 학칙 제11조에 따라 이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의 전형료와 함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이 대학원 소정 양식) 1부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성적증명서 1부
4. 재직증명서(공무원 및 기업체근무자에 한함)
5.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6.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 5 조(입학전형) ① 이 학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대학원 입학시험은 매년 2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항목별 전형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대학성적
2. 면접평가: 전공학문에 대한 이해 및 학습능력에 대한 평가.
3. 제2항의 항목별 평가 및 배점기준과 특별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 6 조(면접위원 위촉) 글로벌골프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각 전공의 강의담당 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면접평가위원을 위촉한다.

제 7 조(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구성) 원장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8 조(합격기준) 합격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9 조(합격결정) 원장은 입학정원과 지원자의 전형 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

제10조(편입학지원자격) 이 학칙 제15조에 따라 이 대학원 편입학지원 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일정기간 수학한 자 또는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제11조(편입학지원서류) 이 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다음 서류와 전

형료를 함께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1. 편입학 원서(소정양식) 1부
2. 전적대학원 수료(재학)증명서 1부
3.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4.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에 한함)
5.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편입학전형) 이 대학원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형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재입학) ① 이 학칙 제16조에 의하여 제적 또는 자퇴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하며 매 학기말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해야 하고, 정원여석 초과 시 총 성적 평점평균수에 의하여 선발한다.

③ 재입학은 제적 후 6개월(1학기)이상 경과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④ 재입학은 원적 전공에 한하여 허가하며, 기 취득학점은 수료(이수)학점에 통산한다. 단, 원적 전공이 폐과된 경우 학생의 기 이수과목을 참작하여 원장이 정한다.

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4조(학력조회) 입학허가가 난 후 소정의 등록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적 대학교(원)의 학력을 입학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회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5조(수업연한) ①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이 학칙 제17조에 따라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②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1. 제29조 제2항에 의거 학기당 기준 학점 초과 취득자

- 2. 매학기 성적 평균평점 4.3 이상인 자
- 3. 재학기간 중 본인의 연구실적이 공인된 학회지에 단독으로 게재되거나, 연구실적의 탁월성이 인정되는 자

제16조(조기졸업 지원 자격 및 절차) ① 조기졸업 지원 자격은 3회의 정규등록과 3학기 차까지 전공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제15조 제3항의 각 호를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5조 2의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3학기차 말에 조기졸업 이수신청서(별지 13호 서식)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학연한) ① 이 대학원 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이 학칙 제18조에 따라 4년(8학기)으로 한다.

②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재학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및
수료

제18조(등록) ① 이 대학원 학생은 이 학칙 제19조에 따라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19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 학칙 제20조에 따라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반환 사유”라 한다)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20조(휴학의 조건) ① 휴학은 재학 중 입영, 질병, 가사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② 휴학은 병역휴학과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③ 휴학은 이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해외발령, 지방발령, 군입대,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등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제21조(휴학의 기간 및 신청 시기) ① 이 학칙 제21조에 따라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로 하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병역휴학
- 2. 해외발령, 타지발령,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③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에는 당해학기 개강일 이전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학사유 발생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경과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22조(휴학의 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신청서’(별지 2호 서식)에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사유서, 병역징집 영장,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휴학연장신청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사유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휴학사유변경신청서’(별지 4호 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을 하여야 하며 매학기 등록기간에 ‘복학신청서’(별지 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승인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③ 병역휴학자의 전역 일자가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내인 경우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후라도 휴학기간 중의 수업 등으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상 수업이 가능한 경우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4조(복학시 등록금) ①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군 입대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②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군입대를 제외한 사유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대체하여 인정한다.

제25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서’(별지 6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제적) 이 대학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학칙 제17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2. 학칙 제21조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종료되었는 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징계된 자.

제27조(수료) ① 이 학칙 제25조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수료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전공에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교과와 학점

제28조(교과과정의 편성) ① 이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이 학칙 제26조에 따라 전공기초 및 전공선택, 논문대체과목 및 논문연구로 구분한다.

② 각 과목의 단위 학점은 3학점, 논문연구는 2학점으로 한다.

③ 교과과정은 2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단,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원장은 교과과정의 편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과과정은 이 대학원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전공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⑤ 교과과정은 학부의 교과과정과 적절한 연계성을 갖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29조(교과과정의 이수) ①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논문연구는 학위과정 마지막 학기에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하고, 2학점으로 한다. 단, 논문연구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논문대체과목은 최저이수학점(24학점) 취득 후 4~5학기차에 걸쳐 2과목(6학점)을 이수하고 그 취득학점이 B학점(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논문대체과목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논문연구과목의 평가는 합격(P), 불합격(F)으로 한다.

제30조(교과목개설 및 강의) ① 교과목은 학기차 구분 없이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원장은 동일과목을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다음 학기 개설 과목은 소정의 기한 내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학기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소정의 기일 내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강 학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3명 미만인 경우에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제31조(수강신청) ① 다음 학기 수강은 소정의 기한 내에 우리 대학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기당 신청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3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과목과 전공이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교과목 담당교수가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3조(타 대학원과의 학점인정) ① 이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이 대학원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②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신청서(별지 8호 서식)
 2. 해당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 ③ 원장이 인정하는 타 대학원과의 협정에 의하여 학점교환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대학원 학생이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학점(2과목)까지 인정한다. 단, 1학기에 3학점(1과목)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 ④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단위학점이 이 대학원과 상이한 경우 이 대학원의 단위학점에 준하여 인정한다.

제 6 장 자격시험

- 제34조(자격시험의 구분) 이 학칙 제32조에 따라 이 대학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한다.
- 제35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은 3학기,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으로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 제36조(실시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실시하며 그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7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은 전공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공기초과목 중 1과목을 원장이 정한다.
- 제38조(시험위원과 평점) 종합시험은 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담당하며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 제39조(제시험)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에 응시 할 수 있다.

제 7 장 학위논문

- 제40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이 학칙 제3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1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논문연구계획서는 4학기 초에 연구제목, 목적,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해 제출한 논문연구계획서상의 논문 제목이 변경될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논문제목변경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③ 논문연구계획서와 함께 학위논문윤리준수서약서(별지 1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제42조(학위논문 심사 청구) ① 학위논문 심사 청구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학위청구논문심사(발표)신청서’(별지 10호 서식)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학위논문 대체·인정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연구보고서 심사 신청서’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3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역할) ① 지도교수는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의 연구 및 작성을 지도한다.
- ③ 논문 지도교수로 선정되어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논문 지도교수에게는 논문심사비를 지급한다.
- 제44조(지도교수의 위촉과 변경) ① 논문 지도교수는 제3학기 차에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 ② 위촉된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변경신청서’(별지 11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논문지도교수의 담당학생 수는 매학기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5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이 학칙 제

- 36조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외부인사는 타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위의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이 박사학위 미소지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 중 1인은 주심으로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단,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 제46조(논문작성 사용언어)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으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7조(논문작성 체제 및 방법) 논문의 규격, 체제 및 작성 방법 등은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의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8조(논문 심사위원 변경)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기간 중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9조(논문심사 기간)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 후 6개월 이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0조(공개발표) 논문은 심사위원 및 관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1회 이상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1조(논문평가 및 심사횟수) ① 논문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연구방법, 내용의 수준, 체제 및 학문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A, B, C, D로 평가하되, B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 횟수는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2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등을 기준으로 1회 이상 시행하며,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 제53조(구술시험위원) 구술시험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겸임한다.

- 제54조(논문심사·구술시험 판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 제55조(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의 결과를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체 없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6조(논문제출 시한) 학위논문은 석사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논문제출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57조(논문제출 부수) 합격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서명한 3부를 포함하여 소정의 부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8조(논문심사자료 제출) 이 대학원 위원회는 논문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한 문헌 또는 부분, 모형, 표본 등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8 장 학위수여

- 제59조(학위수여 요건) ① 이 대학원의 학위수여 요건은 이 학칙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2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성적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5학기 이상 정규 등록자
 4. 석사학위청구 논문이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학위논문대체에 관한 사항에 합당한 요건을 충족한 자
- 제60조(학위논문대체·인정)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대체·인정 받고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 1을 충족할 경우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 외에 논문대체과목 2과목(6학점)을 이수하고, 그 취득 평점이 과목별 3.0이상인 경우
 2. 이 대학원 재학 기간 중 공공기관(관공서, 기업체, 교회)에서 인채 제분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② 제1항 제1호에 의해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초에 논문대체과목 이수신

청서(별지 14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항 제2호에 의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심사료와 심사용 연구보고서 2부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학위종별) 이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골프학석사: 골프비즈니스전공, 골프과학전공

제62조(학위수여 사정) 위원회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을 실시하여 학위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의 시기는 2월과 8월에 시행하며, 연 2회로 한다.

제64조(학위복장) 석사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 색상은 다음과 같다.

① 후드 색상

가. 골프학 - 황록색

② 후드 내부의 바탕 색상은 교색으로 한다.

③ 학위모의 수술 색상은 학위종별 후드 색상으로 한다.

제 9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65조(공개강좌) ① 이 학칙 제45조에 따라 공개강좌의 과정명, 과목 또는 내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② 공개강좌 수강을 원하는 자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6조(연구생) ① 이 학칙 제46조에 따라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

한은 2년으로 한다.

③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④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한다.

제 10 장 장학금 및 상벌

제67조(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 ① 이 학칙 제47조에 따라 이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우수장학금, 학업격려장학금, 교직원복지장학금, 모교장학금, 공로장학금, 외국인장학금, 가족장학금, 인턴십장학금, 면학장학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 타 장학금의 수혜로 성적장학금을 포기할 경우 차석이 승계한다.

제68조(지급대상 및 내용)

제69조(지급제한) ①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
2. 휴학한 자
3. 정규학기(5학기)를 초과하는 자

② 장학금은 중복 지급을 하지 않으며,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유리한 쪽 하나만 지급한다. 단, 인턴십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70조(연구보조금) 연구능력이 현저히 뛰어나고 국내·외 연구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일정부분의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록금 반환 기준(제19조 제2항 관련)

1. 당해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2]

복학시 등록금(제24조 제2항 관련)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대체·인정한다.

휴 학 일 시	대체·인정 금액
수업일수 1/4 이전	등록금의 전액
수업일수 1/4경과 후부터 수업일수 1/3경과 전	등록금의 2/3
수업일수 1/3경과 후부터 수업일수 1/2경과 전	등록금의 1/2
수업일수 1/2경과 후	등록금 전액 납부필

[별표 3]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내용(제67조)

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비고
성적우수 장학금	직전학기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 (재학생의 10% 범위 내)	등록금의 1/3	
학업격려 장학금	교직원, 공무원, 산업체근무자로 재직 중인 자	등록금의 1/3	
공직자우대 장학금	경위 또는 사무관 이상의 직급에 준하는 공직자로 재직 중인 자	등록금의 1/2	
교직원복지 장학금	이 대학교 교직원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이 대학교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록금의 2/3	
모교장학금	이 대학교 졸업자	입학금 및 등록금의 1/3	
협정기관 장학금	우리대학과 협정이 체결된 기관에 재직 중인 자	등록금의 1/2	
공로장학금	이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원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의 1/3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학생	입학금 1/2 및 등록금의 1/3	
가족장학금	이 대학원에 가족 2명 이상 재학 시 1인의 학생	등록금의 1/3	
면학장학금	가계곤란자로서 원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의 1/3	
인턴십장학금	재학생으로서 인턴십 근무자	별도금액	

1. 각종 장학금 지급에서 입학금은 제외 함.
2. 외국인장학금은 본교 출신 외국인의 경우 입학금 전액 및 등록금의 1/2 지급

[별지 제2호 서식]

휴학신청서				담당	팀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 - Mail				
주 소	(우) -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폰			
휴 학 사 유	<input type="checkbox"/> 병무 <input type="checkbox"/> 가사사정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휴 학 기 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font-size: 1.2em;">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경 유 필	재무팀 (등록확인)	중앙도서관	예비군연대(男)	대학원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인	인	인	년 월 일	인	

◆ 병무휴학자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골프대학원

[별지 제4호 서식]

휴학사유변경신청서			담 당	팀 장	원 장
학 과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휴학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현역입영(육군·해군·공군) <input type="checkbox"/> 공익근무요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 대 일		제대예정일			
휴 학 기 간 (미기재)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p>위와 같이 휴학사유를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경 유 필	대학원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20년 월 일		㉠		

◆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골프대학원

[별지 제5호 서식]

복학신청서			담당	팀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 - Mail			
주 소	(우) -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폰		
복 학 사 유	<input type="checkbox"/> 제대(제대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가사회복 <input type="checkbox"/> 건강회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휴 학 기 간 (미 기 재)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학기간)				
위와 같은 사유로 복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div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①</div>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경 유 필	등록확인	예비군연대(男) (후생관 4층)	대학원 접수 일자	전산입력확인	
	①	①	20 년 월 일	①	

◆ 제출서류 (병역휴학자):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전역증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골프대학원

[별표 제6호 서식]

자퇴신청서				담당	팀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우) -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폰			
사 유						
등록금 환 불 여부(미기재)	<input type="checkbox"/> 환불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환불 미대상자	환 불 비 율	등록금의 __분의 __			
<p>위와 같은 사유로 자퇴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경 유 필	등록금 환불대상 확인	중앙 도서관	학생증 반납	예비군연대(男) (후생관 4층)	대학원 접수일자	전산입력확인
	Ⓜ	Ⓜ	Ⓜ	Ⓜ	20 년 월 일	Ⓜ

◆ 제출서류(등록금환불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골프대학원

[별지 제8호의 서식]

타대학원학점인정신청서 (재학생용)										담당	팀장	원장
인 정 학 기										20 학년도 제 학기		
전 공						학 기 차			학 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교류협정 <input type="checkbox"/> 유학 <input type="checkbox"/> 연수					전 화 번 호						
수 학 기 간	~ (학기간)					대 학 명						
						국 가 명						
타 대학원 이수사항												
타 대학원 이수과목					이 대학원 학점 및 성적인정 교과목					비고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인정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학점계					학점계							
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에 의거 타대학원 학점 이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 20px 0;">신 청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font-size: 1.2em;">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골프대학원장 귀하</div>												

※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해당 대학원) 1부
2. 해당학과 교수회의록 1부(타대학원 이수과목과 이 대학원 교과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골프대학원

[별지 제9호 서식]

논문제목변경신청서		담당	팀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전 화 번 호		
당 초 논문 제목				
변경된 논문 제목				
<p>위와 같이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①</p> <p style="text-align: right;">지 도 교 수: ①</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골프대학원장 귀하</p>				

[별지 제10호 서식]

학위청구논문 심사(발표)신청서			
과 정		구 분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수료생
전 공		학 번	
성 명		전 공	
주 소	(우) -	전 화 번 호	
발표예정일	년 월 일	발 표 장 소	
논 문 제 목			
<p>※ 확인기재사항</p> <p>1. 취득학점: 전공과목 학점 (평균평점 - /4.5) 선수과목 학점 (평균평점 - /4.5)</p> <p>2. 자격시험: 종합시험()</p> <p>3. 신청구분: 금번학기 신청자() / 이전학기 보유자() 보유학년도 - 년도 학기</p> <p>위와 같이 학위청구논문을 심사(발표)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p> <p style="text-align: right;">지 도 교 수: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골프대학원장 귀하</p>			

[별지 제11호 서식]

<h2 style="margin: 0;">지도교수변경신청서</h2>				담당	팀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지도교수 변경사항						
변 경 전	①	변 경 후		②		
변 경 일 자						
변 경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신 청 인: ①</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font-weight: bold;">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골프대학원장 귀하</p>						

[별지 제12호 서식]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전공		학번		성명	
지도교수	소속 전공				성명	
논문 제목	국문					
	영문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에 있어 논문대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서약자: (서명)

확인자: (서명)
(지도교수)

글로벌골프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학위논문대체 이수() 학위논문대체 변경()		신청서		담당	팀장	원장
전 공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생 년 월 일		이메일 주소				
전 화	자택) 휴대폰)					
1. 학위논문 대체·인정 신청 상기 본인은 산업대학원 시행세칙 제6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위논문 대체(인정)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학위과정	학위논문대체(인정) 신청					
석사학위 과정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2과목(6학점) 이수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제출					
2. 학위논문 대체이수 변경 신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학위과정	<input type="checkbox"/> 학위청구논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이수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학위청구논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논문대체과목 이수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제출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지도교수 : (변경신청자)			인			
글로벌골프대학원장 귀하						
전산입력		년 월 일				